



2022. 5. 18

국회에산정책처 | 공공기관분석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Government Contribution

장희란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총괄 | 송병철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장희란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지원 | 박혜림 공공기관평가과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assembly.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담당 분석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2022. 5.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2. 4. 2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에 출연, 출자, 보조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9개 부처에서 2,724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2022년 출연금 예산은 53조 3천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7.8%에서 2022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금 예산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 출연금의 특성상 사후적인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출연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정보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출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2007년도에 시행된 「국가재정법」이 출연금에 대한 최초의 규정을 마련한 이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출연금의 현황과 법·제도적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출연금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법·제도·관리상의 요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출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담당 분석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5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요 약 / 1

I. 개 요 / 1

1. 분석 필요성 및 목적	1
2. 분석 대상 및 방법	2

II. 출연금의 개념 및 현황 / 3

1. 출연금의 개념	3
가. 출연금의 개념	3
나. 출연금 적용 대상(출연기관)	4
다. 출연금 특성	6
라. 출연금 유형	9
2. 출연금의 법·제도적 체계	11
3. 출연금 규모	16
가. 연도별 출연금 규모	16
나. 유형별 출연금 규모	17
다. 재원별 출연금 규모	19
라. 부처별 출연금 규모	24
마. 공공기관 출연금 규모	27



Ⅲ. 주요 쟁점 분석 / 29

1. 출연사업 선정 관련 문제점	29
가. 사업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불명확성	29
(1) 「국가재정법」의 한정적 출연금 목적 명시에 따른 사업출연금 법적 근거의 모호성	31
(2) 출연의 법적 근거 미흡 및 출연 목적에 반하는 예산편성·집행	32
나. 출연사업 재정지원 규정의 비일관성에 따른 출연의 법적 근거 확대해석	43
2. 출연사업 예산편성(재정지원) 관련 문제점	50
가. 단일 세부사업에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가 혼재된 출연 예산 편성·집행	50
나. 수행기관 중심의 출연금 지원의 문제	57
3. 공공기관 출연금 관리체계 관련 문제점	63
가. 공공기관 출연금 관리 현황	63
나. 통일된 출연금 정산 규정이 없음에 따라 상이한 공공기관별 정산	65
다. 출연금 정산 규정의 불명확성	70
라. 목적성출연금의 사업비 잔액 및 발생 이자의 목적에 반하는 사용	77

Ⅳ. 결론 및 시사점 / 88

가. 분석의 결론	88
나. 개선과제	90

〈부록〉 출연기관 재정지원 관련 규정 현황 / 92

요 약

1. 개 요

1.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출연사업의 규모는 2022년 기준 53.3조원(총지출 대비 8.8%), 2,724개 세부사업을 지원함
 - 출연사업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17~2022년 동안 연평균 8.9% 증가
 - 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출연금의 타당하고 효율적 운영 필요
- 출연금의 특성상 다른 비목에 비해 집행상 탄력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지적되어 있음
 - 출연금의 타당적·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제기
 - － 출연금에 대한 규정 체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분석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2. 분석 대상 및 방법

- 분석대상
 - 출연금 현황은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수행되는 세출예산 과목상 출연금(350목, 360목) 사업을 대상으로 파악하며,
 - 출연금 사업에 대한 쟁점분석은 연구개발출연금(360목)을 제외한 일반출연금(350목) 중 사업출연금을 중심으로 분석
- 분석방법
 - 출연예산 및 관련 법령 분석

- 출연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출연예산, 관리체계 등 취합자료의 분석
-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시스템(D-Brain)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로부터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 운영 전주기적 흐름에 따라 출연사업 선정, 출연사업 예산편성(재정지원) 및 출연사업의 관리로 나누어 각 시기별 문제점 파악
 - 출연금 사업 선정단계에서는 출연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선정 기준의 일관성을 주요 분석기준으로 사례분석
 - 출연금 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출연사업의 예산편성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주요 분석기준으로 이에 대한 사례분석
 - 출연금 사업 관리단계에서는 수행기관의 출연금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출연금 정산규정의 명확성, 정산 기준의 일관성 여부를 분석기준으로 사례분석
- 국회예산정책처의 연도별(2019~2022년) 「예산안분석보고서」 및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의 예·결산 검토보고서의 개별 출연사업 지적 사례의 유형화

[보고서의 주요 분석 대상 및 기준]

분석 대상	주요 분석기준
출연금 사업 선정	출연사업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출연사업 선정 기준이 일관적인지?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업 취지에 반하는 사례는 없는지?
출연금 사업 예산편성(재정지원)	출연사업 예산편성이 법적 기준을 지켜서 이루어졌는지? 출연사업 예산편성의 기준과 실제간 괴리가 없는지?
출연금 사업 관리	출연금 정산 규정의 유무와 있을 경우 규정이 명확한지? 출연금 정산 기준이 일관적인지?

II. 출연금의 개념 및 현황

1. 출연금의 개념

-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것’을 규정
 - 출연금 근거 규정인 동 조항은 출연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고, 출연금의 목적 및 지급 조건을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이전 적용되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라고 정의
 - －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출연금 개념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 출연금의 적용 대상
 - 출연금은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 적용 대상기관으로 구분 가능
 - － 연구개발출연금은 대부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 일반출연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기관으로 개별법으로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공공기관과 비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출연금의 특성

- 출연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보조금과 비교
 - － 출연금은 반드시 개별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만 재원 사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큰 반면, 보조금은 개별적 근거가 불필요하지만 재원 사용에 제한적
 - － 사후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처리, 비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개별 지침에 따르는 반면, 보조금은 사후정산하여 국고반환이 원칙

□ 출연금의 유형

- 목적에 따라 목적출연금과 기관운영출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목적출연금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출연금으로 연구개발출연금(R&D사업)과 사업출연금(비R&D사업)으로 구분
 - － 기관운영출연금은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 제도상(세목별) 유형 구분에 따르면, 크게 일반출연금(350목)과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구분
 - － 일반출연금은 정부 R&D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비로,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금융성기금출연금, 민간기금출연금 등 4개 비목으로 구성
 - － 연구개발출연금은 정부 R&D 사업으로 지원되는 출연금으로, 연구개발 인건비, 연구개발경상경비, 연구개발건축비,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연구개발활동비등,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 등 6개 비목으로 구성

2. 출연금의 법·제도적 체계

- 현행 법률상 출연금의 정의, 목적, 지급 조건,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없음
 -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출연금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12)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을 가능하도록 하여 출연의 목적과 조건을 한정하는데 그침
- 단편적·제한적으로 출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관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2021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동법 및 동법 시행령 적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원칙적으로 과학기술분야 및 비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모두 적용하나 적용 제외 사업 및 타법우선적용 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지침 등 출연금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실질적 규정
 - 매년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및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발표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

3. 출연금 규모

-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상 출연금(350목, 360목)이라는 비목으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출연사업 규모는 2022년 기준 53.3조원으로, 총지출에서 8.8%를 차지함

- 출연금 규모는 2017~2022년까지 연평균 8.9% 증가를 보이며, 동기간 총지출 예산의 증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연금 규모(2017~2022년)]

(단위: 조원, 개수,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출연금(A)	34.8	33.4	36.3	47.0	48.9	53.3	8.9
(사업수)	(2,034)	(1,504)	(1,750)	(2,169)	(2,064)	(2,724)	6.0
총지출(B)	402.5	427.5	473.9	549.5	558.0	607.7	8.6
비중(A/B)	8.6	7.8	7.7	8.6	8.8	8.8	-

주: 연도별 최종 예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유형별 출연금 규모는 대체로 연구개발출연금이 50%를 상회하나 비슷한 규모
 - 일반출연금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금 유형은 사업출연금으로 2022년 예산 기준 41.7%를 차지함

[유형별 출연금 규모(2017~2022년)]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출연금	168,946 (48.5)	152,450 (45.7)	170,943 (47.1)	243,288 (51.8)	233,718 (47.8)	253,824 (47.6)
- 사업출연금	134,650 (38.7)	121,874 (36.5)	143,500 (39.5)	174,566 (37.1)	196,496 (40.2)	222,159 (41.7)
연구개발출연금	179,175 (51.5)	181,370 (54.3)	192,291 (52.9)	226,662 (48.2)	254,934 (52.2)	279,357 (52.4)
- 연구활동비등	144,062 (41.4)	144,126 (43.2)	151,580 (41.7)	179,733 (38.2)	202,420 (41.4)	227,475 (42.7)
총 출연금	348,121 (100.0)	333,820 (100.0)	363,234 (100.0)	469,950 (100.0)	488,652 (100.0)	533,181 (100.0)

주: 1. 연도별 최종 예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 ()안은 전체 출연금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재원별 출연금 규모는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출연사업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5년 평균 65%를 상회함

[재원별 출연금 규모(2017~2022년)]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219,383 (63.0)	228,978 (68.6)	255,557 (70.4)	322,091 (68.5)	307,766 (63.0)	336,076 (63.0)
특별회계 ¹⁾	89,676 (25.8)	65,225 (19.5)	67,552 (18.6)	89,755 (19.1)	113,311 (23.2)	114,929 (21.6)
기업특별회계	45 (0.0)	29 (0.0)	54 (0.0)	51 (0.0)	23 (0.0)	22 (0.0)
책임운영특별회계	0 (0.0)	0 (0.0)	70 (0.0)	88 (0.0)	143 (0.0)	88 (0.0)
기금	39,018 (11.2)	39,588 (11.9)	40,001 (11.0)	57,965 (12.3)	67,409 (13.8)	82,066 (15.4)
총 출연금	348,121 (100.0)	333,820 (100.0)	363,234 (100.0)	469,950 (100.0)	488,652 (100.0)	533,181 (100.0)

주: 1) 특별회계는 2022년 기준 교통시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며, 회계연도별로 상이함

1. 연도별 최종 예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 ()안은 총 출연금 대비 회계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부처별 출연금 규모는 2022년 기준, 총 53조 3천억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출연 사업 규모가 12조 445억원(2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부 9조 2,315억원(17.3%), 국토교통부 6조 6,149억원(12.4%), 산업통상자원부 6조 5,387억원(12.3%)순임

[소관부처별 출연금 예산 규모(2022년): 상위 10개 부처]

(단위: 억원, %)

부처	일반출연		연구개발출연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643	21.3	94,802	78.7	120,445
교육부	61,790	66.9	30,525	33.1	92,315
국토교통부	60,392	91.3	5,758	8.7	66,150
산업통상자원부	12,525	19.2	52,862	80.8	65,387
방위사업청	0	0.0	38,015	100.0	38,015
중소벤처기업부	18,129	50.4	17,854	49.6	35,983
고용노동부	29,966	100.0	0	0.0	29,966
행정안전부	12,607	93.7	854	6.3	13,461
기획재정부	5,995	52.4	5,443	47.6	11,439
보건복지부	2,724	27.2	7,301	72.8	10,025
총 출연금	253,278	47.5	279,357	52.3	532,635

주: 1. 2022년 본예산 기준

2. 비중은 합계 중 출연금 유형별 금액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공공기관 출연금 규모는 2017년 24조 3,385억원에서 2022년 35조 5,752억원으로 연평균 7.9% 증가
 - － 출연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평균 70% 이상의 출연사업 수행, 기타공공기관이 평균 20%의 출연사업 수행
 - － 공공기관 출연금 예산은 매년 총 출연예산의 65%를 상회함

[공공기관 유형별 출연금 현황(2017~2022년)]

(단위: 억원, %)

공공기관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공기업	준시장형	1,921	1,431	1,388	1,205	1,554	956	△13.0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5,889	6,851	8,091	13,651	13,576	16,839	23.4
	위탁집행형	181,392	162,778	168,843	202,036	233,890	254,638	7.0
기타공공기관		54,182	56,552	58,036	62,007	74,821	83,319	9.0
공공기관 출연금	합 계(A)	243,385	227,612	236,357	278,900	323,841	355,752	7.9
	총출연금 대비비중(A/B)	69.9	68.2	65.1	59.3	66.3	66.7	-
총 출연금(B)		348,121	333,820	363,234	469,950	488,652	533,181	8.9

주: 연도별 최종 예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Ⅲ. 주요 쟁점 분석

1. 출연사업 선정 관련 문제점

(1) 사업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 「국가재정법」 제12조가 출연금 목적을 한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며, 출연금 지원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반하여 출연예산 편성·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
 - 「국가재정법」 제12조¹⁾는 출연금을 ‘기관의 운영과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 등’의 달성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것을 규정
- 「국가재정법」 제12조가 출연금 목적을 한정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출연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함
 - 동 법 제12조에서 명시한 출연 목적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기관운영출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두 유형

1)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에 대한 출연의 목적과 성질을 규정함에 그침

- 현행 제도(「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편성 세부지침」)상 출연금은 법
상 기관운영출연금 및 연구개발출연금 외에 사업출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체 출연금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업출연금을 기
타 영역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의 모호함 발생

* 사업출연금은 전체 출연금 예산의 42% 차지, 전체 출연 사업의 26%를 차지함

[법·제도상 상이한 출연 구분]

「국가재정법」상 출연 구분	「예산안 편성지침」상 출연 구분
• 기관운영출연 •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	• 일반출연금 - 기관운영출연금 - 사업출연금 - 금융성기금 출연금 - 민간기금 출연금 • 연구개발출연금

자료: 「국가재정법」,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 세부지침」

□ 출연의 법적 근거 미흡 및 출연 목적에 부합성이 떨어지는 출연예산 편성·집행의 문제

- 출연금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량의 범위가 넓고 반대급부가 없
어, 지원의 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재정법」제12조는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
하며, 법률에 따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 「국가재정법」 제12조가 요구하는 법적 근거의 유형: ① 출연의 법적 근거(설립법 또는 설치
법)를 갖춘 기관이 설립법 등에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규정, ②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
관은 아니나 동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개별법에 출연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
는 경우

- 2021년 예산편성된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사업의 세 개
내역사업의 일부 수행기관의 동 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 미흡
-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동 업
무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 미흡(개선)

- 2022년 편성된 ‘국립해양박물관운영’ 사업의 기관운영출연금 목적에 반하는 시설개선공사 예산편성 및 사업목적에 부합성이 떨어지는 시설개선 공사 예산 편성
- 2020년 편성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의 연구개발출연금인 기획평가관리비의 목적의 부합성이 떨어지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편성(개선)

(2) 출연사업 재정지원 규정의 비일관성에 따른 출연의 법적 근거 확대해석 가능성

- 출연금 규정체계 통일된 기준이 없어 출연금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의 비일관성 문제 발생
 - 출연금의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 체계는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출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②기관의 ‘설립과 운영’ 뿐만 아니라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별‘사업’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에 대한 출연 근거에 ‘사업’을 포함하는 확대해석의 문제 발생
 - ‘운영’에 ‘사업’을 포함시킬 경우, 해당 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확대해석이 가능해지며, ‘운영’과 ‘사업’의 개별적 해석에 따라 사업출연금 법적 근거 유무가 달라지는 등 출연금 지원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2022년 편성된 ‘기후변화협약대응사업’은 수행기관의 설립·운영의 출연지원 근거를 확대해석하여 출연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집행 이전에 출연 근거가 있는 기관으로 사업 이관
 - 2021년 편성된 ‘사학혁신 지원사업’ 역시 수행기관의 설립·운영의 출연지원 근거를 확대해석하여 출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사후에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2. 출연사업 재정지원 관련 문제점

(1) 단일 세부사업에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가 혼재된 출연예산 편성

- 출연금 분류에 따라 상호배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편성되지 않고 단일 세부사업에 기관운영비와 사업비가 혼재되어 편성
 - 출연금은 ① 목적성 출연금과 ② 기관운영출연금으로 구분
 - － 목적성 출연금은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급되는 출연금으로, 연구개발출연금과 일반출연금 중 사업출연금이 해당
 - － 기관운영출연금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금
 - 실제 출연금 지원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에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성격의 출연금과 사업비 출연금이 혼재되어 편성되며, 기관마다 편성형태 상이
 - － 기관운영출연금의 경우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외에 고유목적 사업비가 포함되어 편성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경우 목적성 사업출연금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 발생
 - － 사업출연금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함께 포함되어 편성됨에 따라 단일 세부사업에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가 혼재되어 편성
 -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사업비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편성되나 공공기관 출연사업의 경우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관리의 어려움 발생
 - － 일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연금 외에 법적 정산 절차가 없어 정확한 사용 내용 파악이 어려운 측면 존재

(2) 사업 목적 고려에 우선한 수행기관의 성격에 따른 출연금 지원

- 출연금 지원에는 법률상 한계 존재

- 출연 기관의 재원지원 방식에 대한 규정 체계는 ① 출연의 방식이나, ② 출연 또는 보조의 방식으로 구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원칙적으로 출연금을 계상한 기관에 대해 출연금 외의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을 규정
 - － 다만, 단서에 예외적으로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불가피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필요)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방식을 출연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부 사례가 존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출연금과 보조금을 동시에 받도록 할 경우 중복적인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중복 지원을 예방하고,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
-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및 성질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 우선한 수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재정지원 방식을 결정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에 대한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출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 － 보조사업이 상대적으로 재량의 정도가 큰 출연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음
 - － 이러한 예산과목 변경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재량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기관의 편의가 증대되는 반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집행잔액 반납 등에 관한 통제 약화나 실집행 현황 파악이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
 - － ‘세어피리스촉진지원’ 사업 등 32개 사업의 수행기관 성격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의 일괄 편성
 - －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활동’ 사업의 수행기관 성격에 따라 재정지원 방식 결정으로 지역간 다른 사업형태(보조사업 및 출연사업)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법제정을 통해 지역별 별개의 사업형태로 운영되는 지원방식 해소 예정

3. 출연사업 관리체계 관련 문제점

(1) 통일된 사업출연금금 정산 규정 부재에 따른 공공기관별 상이한 정산

- 사업출연금금은 관련 법령이나 소관부처 및 해당기관의 지침·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공통적인 규율체계는 없는 실정으로 공공기관마다 정산방식이 상이
 - 출연금금 정산 규정에 따라 사업비 정산하는 경우와 정산 규정이 없음에도 내부의 정산 절차를 통해 정산하는 경우로 구분
 - －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할 경우, ① 법령에 따른 출연사업 정산, ② 소관 부처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출연사업 정산, ③ 위탁계약 협약에 따른 출연사업 정산, ④정관 또는 회계규정에 따른 출연사업 정산, ⑤ 국고 보조금 정산 절차를 준용하여 출연사업 정산으로 구분하는 등 다양함
 - 일부 기관의 경우 출연금금 사업비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이자수익을 기관의 자체수익에 반영하여 기관운영비에 충당하거나 기관 내 유보
- 공공기관별, 개별 출연사업별 정산체계의 상이함은 통일된 상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집행상 탄력성이 있는 출연금의 특성상 반드시 정산에 따른 이자수익 등의 반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 재정운영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통일된 정산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2) 출연금 정산 규정의 불명확성

- 출연사업비 정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출연금의 투명한 정산이 어려움
- 불명확한 출연금 정산 규정에 따른 정산의 사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연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

- 원 정관」 제16조(잉여금의 처리)에 따르며, 동 규정은 잉여금이 사업비 잔액에 한정한 것인지, 이자수익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금융수익을 기관 이월손실금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는 등 자체 수익화하여 활용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출연금 정산 및 사후관리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회계규정」 제83조(잉여금의 처리)에 따르며, 동 규정 역시 잉여금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금융수익을 기관의 잡수익으로 계상

(3) 목적성 사업출연금의 사업비 잔액 및 발생 이자의 목적에 반하는 사용

- 목적성 사업출연금의 사업비 잔액 및 이자수입의 정산을 통해 차년도 해당 사업예산에 반영 필요
 -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연금을 제외하고 일반출연금 사업에 대한 정산 규정은 없으며, 사업출연금의 사업비 잔액 및 이자수익이 해당 사업의 차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기관의 자체 수익으로 계상
 - 사업출연금에 따른 이자수익이 해당 사업의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다른 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사업에 포함된 여타 다른 사업)에 반영

4. 결론 및 시사점

- 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금 예산의 타당하고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적 요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 출연사업 선정 시, 출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일

관성 있는 선정 기준이 부재

- 출연사업 예산편성(재정지원) 시, 출연금 목적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일 세부 사업에 서로 다른 목적의 출연금이 혼재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출연금 지원의 법적 한계(개별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출연 예산 편성의 문제
- 현행 출연사업 지원방식은 사업목적에 우선한 수행기관 성격을 중심으로 출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연금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 출연사업 관리에 있어 통일된 정산 규정이 없어 사업별 상이한 정산체계를 갖고 있으며, 개별 정산규정의 경우에도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출연금 정산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

□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국가재정법」 제12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출연금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법에서 규정하는 출연금 유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외의 다른 목적의 출연금은 기타 영역으로 포함시키며 제도상으로 운영
 - － 실제 출연금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개발출연금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출연금의 중요성을 법에 반영하여, 현재 규정된 두 가지 유형 이외에 어떠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사업이 출연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출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엄격한 적용 및 출연지원에 대한 법규정의 구체화 필요
 - － 「국가재정법」 제12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출연금 지원 남용을 막기 위해 출연의 법적 근거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며, 사업 수행 근거에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와 해당기관이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 출연 방식으로 재정지원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 출연의 재정지원에 대한 비일관적 규정 개정을 통해 기관운영과 사업의 법률적 차이에 대한 명백한 기준 마련하여 해석에 따라 출연사업 범위

가 달라지는 문제 개선 필요

○ 사업출연금의 통일된 정산 규정 마련 필요

- －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등에 대한 공통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비연구개발사업인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투명한 출연금 관리를 위한 공통의 규율 체계 마련 필요

1

분석 필요성 및 목적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동 법은 출연의 목적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출연사업 규모는 2022년 기준 53.3조원에 이르며(총지출 대비 8.8%), 2,724개 세부 사업을 출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출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2022년 사이 연평균 8.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출연금은 특성상 다른 비목에 비해 집행상 탄력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큼에 따라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출연금의 지원 근거인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금 지원에 대해 법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 나아가 출연기관이 집행하는 출연사업을 보면, 개별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관리에 있어서도 통일된 규정이 없어 사업별로, 수행 기관별로 제각각 관리되는 등 출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문제 및 예산 교부 후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출연금 예산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어렵게 하는 법·제도적 요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분석보고서는 출연금 관련 법체계 및 예산 검토를 통해 출연금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요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출연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재정지원),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세출예산 과목상 출연금(350목, 360목)예산으로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현황과 법·제도적 체계를 파악하며, 일반출연금(350목) 중 사업출연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분석방법은 출연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출연예산 및 관리체계 등의 자료와 출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사업 운영의 전주기적 흐름에 따라 출연사업 선정, 출연사업 예산편성(재정지원), 및 출연사업의 관리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시기별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년부터 2022년 「예산안분석보고서」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의 예·결산 검토보고서의 개별 출연사업에 대한 지적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출연사업 선정단계에서는 출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사업 선정 기준이 일관적인지를 주요 분석기준으로 하여 이에 반하는 사례를 분석하였고, 출연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출연사업의 예산편성이 출연의 법적 한계에 위배되는지, 예산편성 기준과 실제 간 괴리는 없는지 여부를 주요 분석기준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연사업 관리단계에서는 수행기관의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출연금 정산 규정이 있는지, 있을 경우 규정이 명확한지, 그리고 출연금 정산 기준이 일관적인지를 기준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분석 대상 및 기준]

분석 대상	주요 분석기준
출연사업 선정	출연사업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출연사업 선정 기준이 일관적인지?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업 취지에 반하는 사례는 없는지?
출연사업 예산편성(재정지원)	출연사업 예산편성이 법적 기준을 지켜서 이루어졌는지? 출연사업 예산편성의 기준과 실제간 괴리가 없는지?
출연사업 관리	출연금 정산 규정의 유무와 있을 경우 규정이 명확한지? 출연금 정산 기준이 일관적인지?

1

출연금의 개념

가. 출연금의 개념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연금의 근거 규정인 동 조항은 출연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출연금의 용도 및 지급 조건을 개략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만, 출연금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온 만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적용되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라고 정의하였다.²⁾ 그러나 이 역시 연구개발사업에 국한한 규정으로 비연구개발분야를 포함한 출연금의 포괄적인 정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³⁾, 위 규정이 폐지되고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법적으로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출연금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으로 교부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르면, 출연금을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동이용시설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해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역시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3)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도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나. 출연금 적용 대상(출연기관)

출연금은 크게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구분하는데, 이에 따라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 적용 대상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대부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대상 기관으로 2021년 8월 기준 61개소가 있다⁴⁾. 이밖에 정부출연기관으로서 R&D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기타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R&D 사업 수행 기관도 포함된다.

일반출연금 적용 대상기관은 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기관으로 개별법으로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기타 정부출연기관은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 기관⁵⁾과 그렇지 않은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 기관 중 출연기관은 2022년 기준 35개소이다.

[출연금 적용 대상기관]

구분	근거법	기관명
정부출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제외하였다.

5)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한다. 「202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 중 출연기관은 35개소, 보조기관은 28개소이다.

구 분	근거법	기관명
연구 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연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 기관	각 개별법	(수지차보전공공기관_출연기관)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농업기술시용화재단, 도로교통공단, 동북아역사재단,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이 밖에 공공기관 외에도 출연사업을 수행하는 비공공기관이 있으며, 각 개별사업법에 따라 출연사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비공공기관인 출연사업 수행기관으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이 있으며, 교육부의 경우 국립대학교, 대한민국학술원 등이 출연지원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의 기관이 출연사업을 수행하며, 행정안전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 한국섬진흥원 등이 출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 출연금 특성

앞서 살펴본 출연금 개념 정의에 따르면⁶⁾, 반대급부가 없는 국가의 재정적 원조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보조금과 비교가 많이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논의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정리하면, 교부 근거, 집행상 재량 정도, 사후정산 의무 등에서 상대적인 차이를 보인다. 보조금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해 본 출연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연금은 반드시 개별 법률에 교부 근거가 필요하다. 출연금은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반면, 보조금은 반드시 개별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은 경우 개별 법령에 ‘보조할 수 있다’ 등으로 지급 근거가 명기되어 있다.

둘째, 출연금은 사용 용도가 포괄적이며, 집행상 재량정도가 크다.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명기된 출연금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함에 반해, 보조금은 사전에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교부하고 있으며(「보조금법」 제22조),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동법 제30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동법 제31조의2), 보조금의 환수(동법 제33조), 벌칙(동법 제40조~42조)을 받을 수 있다.⁷⁾

6)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으로 교부하는 금액’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셋째, 출연금은 그 유형에 따라 정산 등 관리체계가 상이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연구개발출연금)의 정산 및 회수는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 법은 발생한 이자 수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거나 재투자하는 등 그 용도를 정해두고 있다.⁸⁾ 다만 비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출연에 해당하는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관리 등 일부 항목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예산편성 지침이나 각 기관(또는 연구회)의 집행지침을 따르게 된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기타 정부출연기관의 일반출연금의 경우 정산 등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사업출연금)의 미집행분과 목적 외 사용분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2022년도 예산 집행지침」, pp.231~232).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은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9) 2021년도까지는 사업출연금의 경우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고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정산 하며, 집행잔액 및 이자는 국고에 반환한다.

요컨대, 출연금은 반드시 개별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만 재원 사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큰 반면, 보조금은 개별법적 근거가 불필요하지만 재원 사용에 제한적이다.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교]

구분	출연금	보조금
개념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으로 교부하는 금액(법적 개념 정의 없음)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일반법상 근거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상 근거	반드시 법률상 지원 근거 필요(「국가재정법」 제12조)	필수 요소 아님
적용 대상	정부 출연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민간
용도 지정	- 기관출연금: 사용 용도 비지정 - 목적출연금: 사용 용도 지정	사용 용도 지정 필수
집행잔액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처리 - 각 공공기관 개별 지침에 따름	사후 정산, 국고 반환 처리
이자수입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처리 - 각 공공기관 개별 지침에 따름	국고 반환 처리

(「2021년도 예산 집행지침」, pp212~218), 기관운영출연금의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1년도 예산 집행지침」, pp212~218).

라. 출연금 유형

출연금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구분된다. 본래 출연금은 출연금, 금융성기금 출연금, 민간기금 출연금으로만 구분하고 있었으나 2016년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개편하고, 2017년부터 일반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금융성기금출연금, 민간기금출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출연금은 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장비·시스템구축비, 연구활동비등,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로 구성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편성지침」이라한다.)은 출연금을 크게 일반출연금(350-01목, 350-02목)과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일반출연금은 정부 R&D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비를 의미하며, 연구개발출연금은 정부 R&D 사업으로 지원되는 출연금을 의미한다.

일반출연금 중 기관운영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로 경상경비적 성격의 출연금을 의미하며, 사업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으로 목적성 출연금이다.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세목 구분과 실제 출연금 예산편성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일반출연금의 경우 목적에 따라 기관운영출연금과(350-01)과 사업출연금(350-02)으로 편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철도공단 의 2021년 예산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출연금인 국가철도공단 관리비(350-01)와 56개의 사업출연금(350-02) 예산이 편성되었다.

한편,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세목별로 구분하여 출연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을 인건비(360-01), 경상경비(360-02), 건축비(360-03), 장비·시스템구축비(360-04),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로 구분하여 출연받고 있다.

[일반출연금의 예산편성]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출연금 (350목)	실제 예산편성 사례(2021년도 예산)	
개념 · 사업	정부 R&D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비	국가철도공단 관리비(2734-301)	
세목 구분	(350-01) 기관운영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 기관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국가철도공단 관리비	137,323
	(350-02) 사업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56개 출연사업별로 사업출연금 편성	5,671,370
	(350-03) 금융성기금 출연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금융성 기금으로의 출연금 ¹⁾		-
	(350-04) 민간기금 출연금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기금으로의 출연금 ²⁾		-

주: 1)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기금으로서 전출금은 기금전출금(610-03)목으로 계상

2)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민간이 관리주체인 기금으로의 출연금과는 별개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을 바탕으로 재구성

[연구개발출연금의 예산편성]

(단위: 백만원)

구분	연구개발출연금 (360목)	실제 예산편성 사례(2021년도 예산)	
개념 · 사업	정부 R&D 사업으로 지원되는 출연금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5)	
세목 구분	(360-01) 연구개발인건비		24,084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2,851
	(360-03) 연구개발건축비		9,800
	(36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13,999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		33,378
	(360-06)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		-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을 바탕으로 재구성

과거 「예산회계법」¹⁰⁾ 체계에서는 출연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시 출연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이후 개정사항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의 출연금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목적과 조건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는데에 그치고 있으며, 출연금에 대한 개념, 성질, 관리 등을 규정한 기본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가재정법」 외에 단편적으로 출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 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관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¹¹⁾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출연금 목적의 하나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 밖에 법령은 아니지만 출연금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해 실질적인 규율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및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배포하는 각 회계연도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등이 있다.

10) 1961년 12월 19일에 공포된 예산과 회계에 관한 기본법으로 2006년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11)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출연금 관련 법령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법률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	비목별 지침에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관리에 관해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 관리에 대해 비

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다. 동 규정이 법률로 격상되어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¹²⁾은 원칙적으로 모든 연구개발출연사업을 동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포괄범위 변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u>연구 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사업</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u>연구 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u> 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2)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동법 제3조 및 4조에서 적용제외 사항과 타법 우선적용 사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 타법에 우선한다는 제외 규정을 두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경우 해당 법령 및 지침을 따르게 된다.

또한 부처 또는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경우 연구개발비관리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나 소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지침을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비관리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편성 집행지침」 등을 따르게 된다.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시행령은 모든 국가 R&D 과제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법 제4조) 일반법적 성격과 다른 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 범위(법 제3조·제4조)]

구분	주요 내용
적용 제외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적용 제외 사업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②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③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추진되는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분야의 사업 ④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⑤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타법 우선 적용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타법 우선 적용 사업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②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③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2)

한편 세출과목 구분에 따른 출연금의 제도적 체계를 살펴보면, 7개의 목 가운데 이전지출(300목)에 해당한다. 이전지출에는 보전금(310목), 민간이전(320목), 자치단체이전(330목), 해외이전(340목), 그리고 일반출연금(350목)과 연구개발출연금(360목)이 속해있다.

[세출과목구분(전 회계 및 기금)에 따른 출연금 현황]

목번호	목(과목명)		세목(내역)
100	인건비		
200	물건비		
300	이전 지출	(310) 보전금	
		(320) 민간이전	
		(330) 자치단체이전	
		(340) 해외이전	
		(350) 일반출연금	(01) 기관운영출연금
			(02) 사업출연금
			(03) 금융성기금출연금
			(04) 민간기금출연금
		(360) 연구개발출연금	(01) 연구개발인건비
			(02) 연구개발경상경비
			(03) 연구개발건축비
			(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05) 연구개발활동비등
			(06)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
400	자산취득 및 운용		
500	상환지출		
600	전출금 등		
700	예비비 및 기타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가. 연도별 출연금 규모

2022년 예산에서 편성된 출연금은 2021년 대비 4조 4천억원 증가한 53조 3천억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34조 8천억원에서 연평균 8.9%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8.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총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출연금 예산 비중은 2017년 8.6%에서 2019년 7.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 2022년 8.8%로 2017년에 비해 0.2%p 상승하였다.

출연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2017년 2,034개(세부사업 기준)에서 2022년 2,724개로 연평균 6.0% 증가하였다. 2017년의 경우, 출연유형의 개편으로 일반법령 출연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개편 이후인 2018년부터 출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연금 규모(2017~2022년)]

(단위: 조원, 개수,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출연금(A)	34.8	33.4	36.3	47.0	48.9	53.3	8.9
(사업수)	(2,034)	(1,504)	(1,750)	(2,169)	(2,064)	(2,724)	6.0
총지출(B)	402.5	427.5	473.9	549.5	558.0	607.7	8.6
비중(A/B)	8.6	7.8	7.7	8.6	8.8	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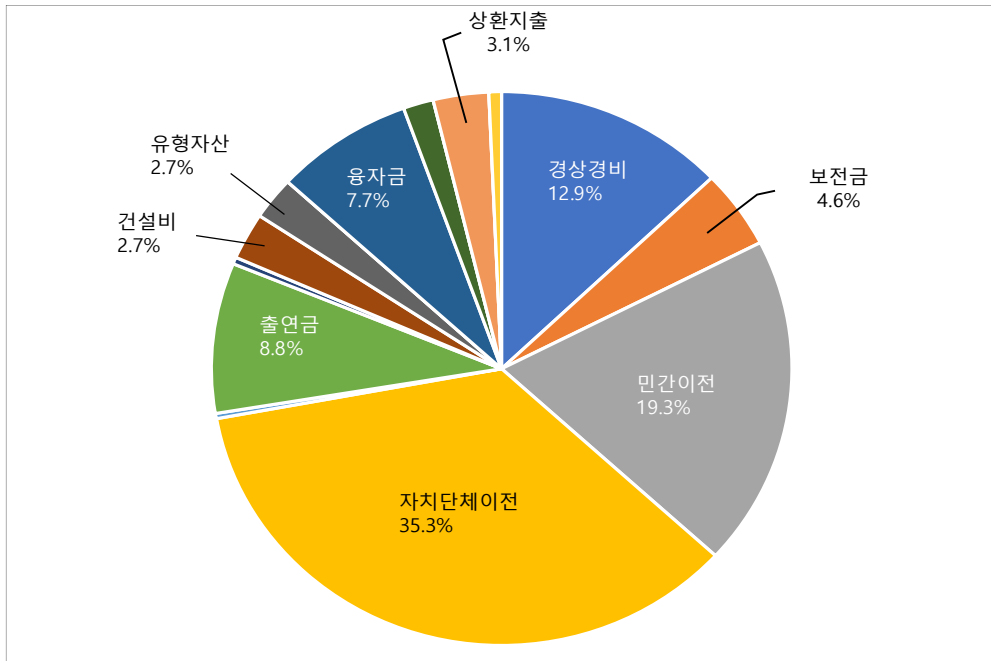
주: 연도별 최종지출예산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한편, 2022년 총지출 예산(607조 7천억원)의 지출 항목별 예산 비중을 보면, 출연금은 53조 3천억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단체이전(35.3%), 민간이전(19.3%), 경상경비(12.9%)에 이어 큰 규모를 보이고 있어, 출연금이 지출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출항목별 예산 비중(2022년)]

(단위: %)



주: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여비+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연구용역비+안보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나. 유형별 출연금 규모

출연금은 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구분된다. 세출 과목 구분에 따르면, 일반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금융성기금출연금, 민간기금출연금과 같이 네 가지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출연금은 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장비·시스템구축비, 연구활동비등,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와 같이 여섯 가지 세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먼저, 최근 5년간 출연금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체 출연금 중 일반출연금이 50%를 하회하고 연구개발출연금이 50%를 상회하여 연구개발출연금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예외적으로 2020년의 경우 일시적으로 일반출연금이 51.8%, 연구개발출연금이 48.2%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출연금 중 금융성기금출연금의 비중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출연금 유형별 규모: 금액(2017~2022년)]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출연금	168,946 (48.5)	152,450 (45.7)	170,943 (47.1)	243,288 (51.8)	233,718 (47.8)	253,824 (47.6)
- 기관운영출연금	28,254	27,074	21,714	22,708	22,496	22,987
- 사업출연금	134,650 (38.7)	121,874 (36.5)	143,500 (39.5)	174,566 (37.1)	196,496 (40.2)	222,159 (41.7)
- 금융성기금출연금	4,793	3,401	5,472	45,762	14,405	8,374
- 민간기금출연금	1,250	100	257	252	321	304
연구개발출연금	179,175 (51.5)	181,370 (54.3)	192,291 (52.9)	226,662 (48.2)	254,934 (52.2)	279,357 (52.4)
- 인건비	14,659	15,618	17,913	18,912	20,383	20,772
- 경상경비	2,864	3,377	3,280	3,237	3,551	3,468
- 건축비	4,508	4,802	4,797	4,650	3,452	3,429
- 장비·시스템구축	13,082	13,446	14,721	20,131	21,047	20,343
- 연구활동비등	144,062 (41.4)	144,126 (43.2)	151,580 (41.7)	179,733 (38.2)	202,420 (41.4)	227,475 (42.7)
- 기획평가관리비	-	-	-	-	4,081	3,871
합계	348,121 (100.0)	333,820 (100.0)	363,234 (100.0)	469,950 (100.0)	488,652 (100.0)	533,181 (100.0)

주: 1. 연도별 예산 기준

2. ()안은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일반출연금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출연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출연금으로, 최근 5년 평균 8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출연금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으로 최근 5년 평균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출연 사업수(세부사업 기준)는 2022년 기준 2,724개로 일반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833개,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1,891개로 연구개발출연 사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부사업당 평균적인 출연금 예산은 일반출연금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출연금 유형별 규모: 사업수(2017~2022년)]

(단위: 개수,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출연금	895 ¹⁾ (44.0)	515 (34.2)	571 (32.6)	671 (30.9)	765 (27.0)	833 (30.6)
- 기관운영출연금	113	97	101	95	141	143
- 사업출연금	448 (22.0)	410 (27.3)	457 (26.1)	559 (25.8)	611 (21.6)	676 (24.8)
- 금융성기금출연금	8	6	9	12	10	12
- 민간기금출연금	7	2	4	5	3	2
연구개발출연금	1,139 (56.0)	989 (65.8)	1,179 (67.4)	1,498 (69.1)	2,070 (73.0)	1,891 (69.4)
- 인건비	145	103	98	103	108	93
- 경상경비	139	94	98	103	97	93
- 건축비	98	66	52	57	53	56
- 장비·시스템구축	135	112	117	143	123	112
- 연구활동비등	622 (30.6)	625 (41.6)	814 (46.5)	1,090 (50.3)	1,097 (38.7)	1,380 (50.7)
- 기획평가관리비	-	-	-	-	592	85
총 출연사업수	2,034 (100.0)	1,504 (100.0)	1,750 (100.0)	2,169 (100.0)	2,835 (100.0)	2,724 (100.0)

주: 1) 2017년의 경우 개편이전의 일반법령출연 사업 319개 포함

1. ()안은 총 출연사업수 대비 유형별 출연사업수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다. 재원별 출연금 규모

출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2017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 출연금 재원은 일반회계가 6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가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의 출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원별 출연금 규모(2017~2022년)]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219,383 (63.0)	228,978 (68.6)	255,557 (70.4)	322,091 (68.5)	307,766 (63.0)	336,076 (63.0)
특별회계 ¹⁾	89,676 (25.8)	65,225 (19.5)	67,552 (18.6)	89,755 (19.1)	113,311 (23.2)	114,929 (21.6)
기업특별회계	45 (0.0)	29 (0.0)	54 (0.0)	51 (0.0)	23 (0.0)	22 (0.0)
책임운영특별회계	0 (0.0)	0 (0.0)	70 (0.0)	88 (0.0)	143 (0.0)	88 (0.0)
기금	39,018 (11.2)	39,588 (11.9)	40,001 (11.0)	57,965 (12.3)	67,409 (13.8)	82,066 (15.4)
총 출연금	348,121 (100.0)	333,820 (100.0)	363,234 (100.0)	469,950 (100.0)	488,652 (100.0)	533,181 (100.0)

주: 1) 특별회계는 2022년 기준 교통시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포함

1. 최종 예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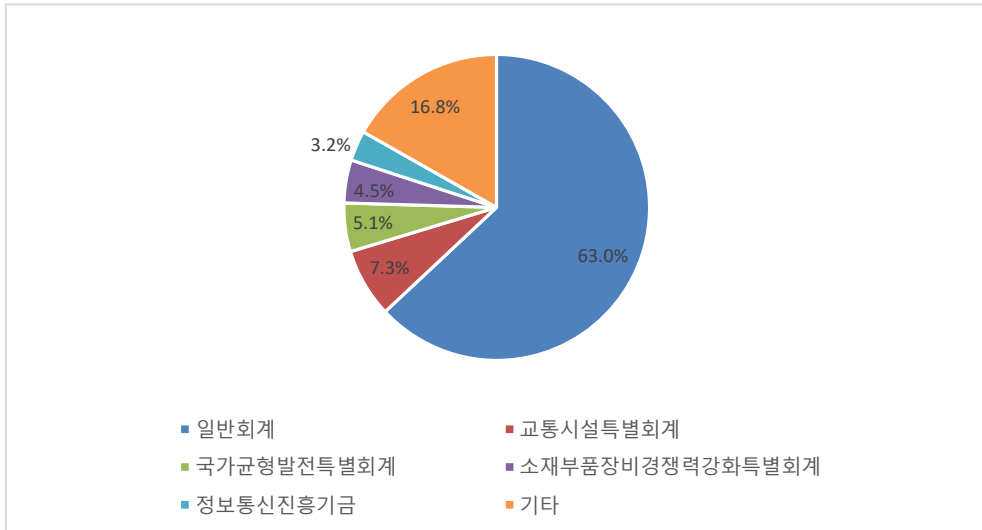
2. ()안은 총 출연금 대비 회계별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2022년의 경우 일반회계, 7개의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25개의 기금 등 총 35개의 회계에서 출연사업을 수행하였다. 다른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수행되는 출연금 규모가 6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특별회계인 교통시설특별회계(7.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5.1%),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4.5%), 정보통신진흥기금(3.2%)순으로 나타났다.

[재원별 출연금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금을 제외한 회계별 출연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출연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출연금 43.4%, 연구개발출연금 56.6%로 연구개발출연금의 비중이 조금 더 컸다. 가장 큰 출연재원인 일반회계에서도 일반출연금(41.9%)보다 연구개발출연금(58.1%)의 비중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경우 일반출연금의 비중이 높고, 그 외 다른 회계 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특별회계 중 출연금 비중이 가장 큰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일반출연금 비중이 92.7%를 차지하며,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소관 일반철도건설 사업(2조 3,339억원), 고속철도건설 사업(556억원) 및 철도시설공단지원 사업(1,46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회계 중 두 번째로 출연금 규모가 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연구출연금 비중이 72.6%를 차지하며, 산학협력선도대학(LINK)육성 사업(3,740억원),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3,908억원),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2,55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회계별(기금제외) · 유형별 출연금 규모(2022년)]

(단위: 억원, %)

구분	일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반회계	140,959	41.9	195,117	58.1	336,076
특별회계	54,854	47.7	60,075	52.3	114,929
교통시설특별회계	36,023	92.7	2,825	7.3	38,84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462	27.4	19,790	72.6	27,25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46	34.3	3,349	65.7	5,095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004	4.1	23,201	95.9	24,20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624	23.7	8,467	76.3	11,09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2	100.0	0	0.0	12
환경개선특별회계	5,982	71.0	2,443	29.0	8,425
기업특별회계	0	0.0	22	100.0	22
우편사업특별회계	0	0.0	22	100.0	22
책임운영특별회계	88	100.0	0	0.0	88
소계	195,901	43.4	255,214	56.6	451,115
총 출연금	253,824	47.6	279,357	52.4	533,181

주: 1. 비중은 합계 중 출연금 유형별 금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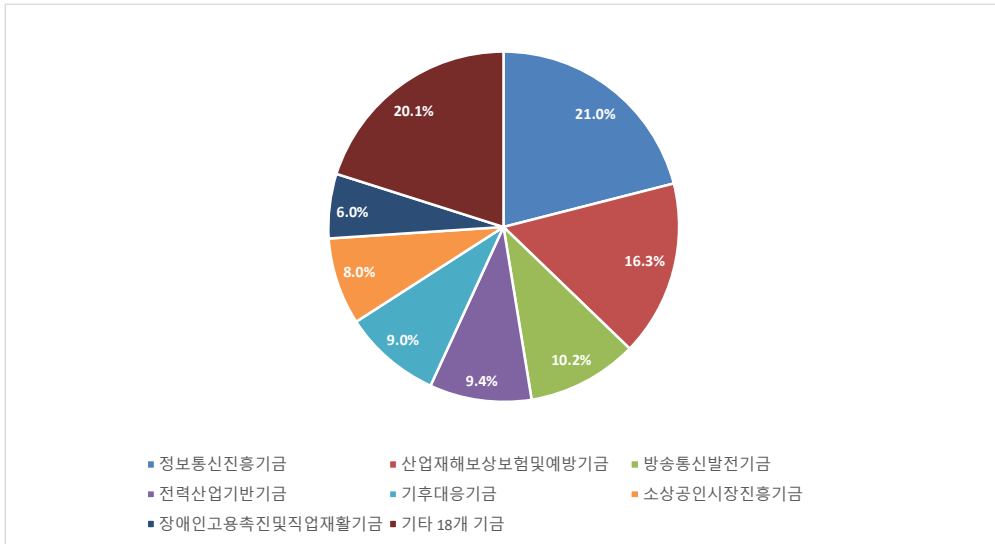
2. 출연금 합계는 기금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회계연도 기금 출연금은 26개 기금에서 5조 7,757억원이 지출되었다. 기금별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1조 7,242억원(21.0%)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1조 3,354억원, 16.3%), 방송통신발전기금(8,357억원, 10.2%), 전력산업기반기금(7,711억원, 9.4%), 기후대응기금(7,413억원, 9.0%)순으로 많은 출연금이 집행되었다.

[재원별 출연금 비중: 기금(2022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금별 · 유형별 출연금 규모(2022년)]

(단위: 억원, %)

구분		일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금		57,923	70.6	24,143	29.4	82,066
	정보통신진흥기금	13,118	76.1	4,124	23.9	17,24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3,354	100.0	0	0.0	13,354
	방송통신발전기금	4,198	50.2	4,160	49.8	8,357
	전력산업기반기금	1,052	13.6	6,658	86.4	7,711
	기후대응기금	1,979	26.7	5,434	73.3	7,41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6,548	99.4	37	0.6	6,58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913	100.0	0	0.0	4,913
	고용보험기금	3,331	100.0	0	0.0	3,331
	원자력기금	1,123	34.7	2,115	65.3	3,237
	복권기금	2,997	100.0	0	0.0	2,99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205	84.7	218	15.3	1,423
	주택도시기금	1,326	100.0	0	0.0	1,326
	국민건강증진기금	389	42.8	519	57.2	908
	국민연금기금	886	100.0	0	0.0	886

구분	일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과학기술진흥기금	364	62.5	219	37.5	58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46	100.0	0	0.0	546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55	13.9	341	86.1	396
관광진흥개발기금	229	83.8	44	16.2	273
임금채권보장기금	257	100.0	0	0.0	257
국민체육진흥기금	0	0.0	207	100.0	207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0	0.0	67	100.0	67
국제질병퇴치기금	20	100.0	0	0.0	20
석면피해구제기금	15	100.0	0	0.0	1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4	100.0	0	0.0	14
수산발전기금	7	100.0	0	0.0	7

주: 비중은 합계 대비 유형별 출연금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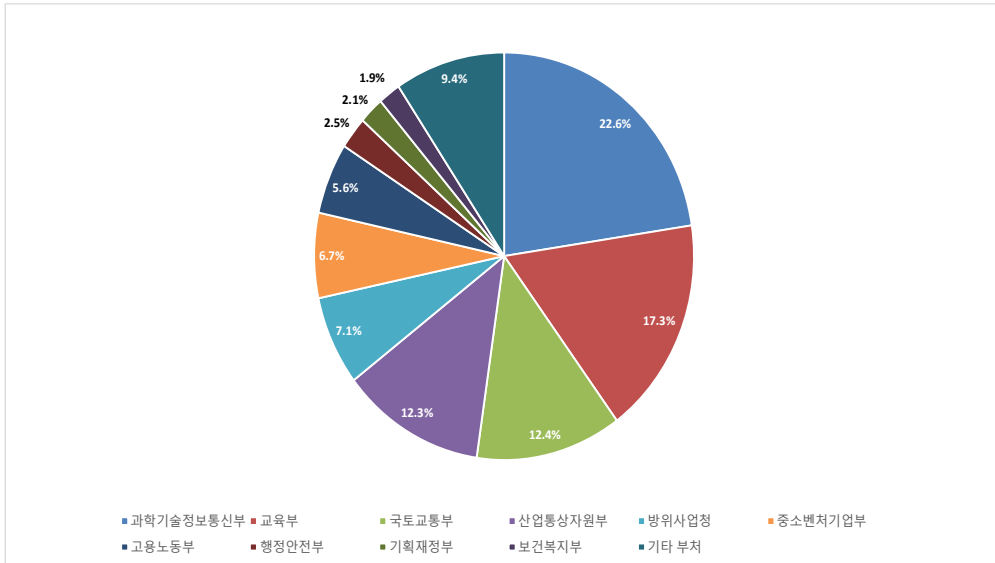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달리 일반출연금 비중(70.6%)이 연구개발출연금 비중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다. 회계별 출연금의 경우 R&D 사업에 편성된 출연금이 많은 반면, 기금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지원되며, 용도가 사전에 지정되어 일반출연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 부처별 출연금 규모

소관부처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총 39개 부처에서 53조 3,181억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수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조 445억원(22.6%)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뒤이어 교육부(9조 2,315억원, 17.3%), 국토교통부(6조 6,150억원, 12.4%), 산업통상자원부(6조 5,387억원, 12.3%), 방위사업청(3조 8,015억원, 7.1%) 등의 순으로 다섯 개 부처가 전체 출연금 규모의 71.7%를 차지했다.

[소관부처별 출연금 규모 비중(2022년)]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출연금은 2,724개의 세부사업에 집행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65개 (20.7%)로 가장 많은 출연사업을 수행하였고, 뒤이어 산업통상자원부(408개, 15.0%), 국토교통부(148개, 5.4%), 방위사업청(135개, 5.0%), 고용노동부(90개, 3.3%) 순으로 5개 부처가 전체 출연사업 규모의 49.4%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2022년 전체 출연금 지출 중 대부분이 R&D 사업인 연구개발출연금(78.7%)으로 구성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80.8%), 방위사업청(100.0%)도 출연금의 대부분이 연구개발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의 경우 일반출연금 비중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일반출연금 비중이 91.3%, 교육부 66.9%, 고용노동부 및 외교부 100%, 행정안전부 93.7%가 일반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출연금 예산 규모가 크진 않지만 금융위원회,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통일부, 특허청 등의 부처도 출연 예산이 일반출연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다.

[소관부처별 출연금 예산 규모(2022년)]

(단위: 억원, %)

부처	일반출연		연구개발출연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643	21.3	94,802	78.7	120,445
교육부	61,790	66.9	30,525	33.1	92,315
국토교통부	60,392	91.3	5,758	8.7	66,150
산업통상자원부	12,525	19.2	52,862	80.8	65,387
방위사업청	0	0.0	38,015	100.0	38,015
중소벤처기업부	18,129	50.4	17,854	49.6	35,983
고용노동부	29,966	100.0	0	0.0	29,966
행정안전부	12,607	93.7	854	6.3	13,461
기획재정부	5,995	52.4	5,443	47.6	11,439
보건복지부	2,724	27.2	7,301	72.8	10,025
외교부	9,375	100.0	0	0.0	9,375
환경부	6,296	70.8	2,597	29.2	8,893
해양수산부	515	7.1	6,755	92.9	7,27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	0.0	5,457	100.0	5,457
농림축산식품부	1,755	42.1	2,418	57.9	4,173
농촌진흥청	358	12.5	2,500	87.5	2,858
경찰청	1,408	70.7	584	29.3	1,993
문화체육관광부	529	29.0	1,296	71.0	1,825
원자력안전위원회	190	14.2	1,149	85.8	1,339
금융위원회	1,288	100.0	0	0.0	1,288
국방부	0	0.0	722	100.0	722
식품의약품안전처	119	17.6	556	82.4	674
여성가족부	626	100.0	0	0.0	626
기상청	125	20.5	488	79.5	613
공정거래위원회	613	100.0	0	0.0	613
산림청	9	1.6	554	98.4	563
해양경찰청	2	0.5	418	99.5	420
통일부	374	100.0	0	0.0	37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0	89.3	30	10.7	280
소방청	2	1.0	206	99.0	208
문화재청	0	0.0	102	100.0	102
특허청	88	100.0	0	0.0	88
질병관리청	0	0.0	67	100.0	67

(단위: 억원, %)

부처	일반출연		연구개발출연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관세청	0	0.0	44	100.0	44
국회	43	100.0	0	0.0	43
방송통신위원회	38	100.0	0	0.0	38
새만금개발청	25	100.0	0	0.0	25
인사혁신처	13	100.0	0	0.0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	100.0	0	0.0	12
합계	253,824	47.6	279,357	52.4	533,182

주: 비중은 합계 중 출연금 유형별 금액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ID-Brain)

마. 공공기관 출연금 규모¹³⁾

연도별 공공기관의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24조 3,385억원에서 2022년 35조 5,752억원으로 연평균 7.9%가 증가하였고, 총 출연금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8.9%)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이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평균 70% 이상의 출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평균 20% 이상의 출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 예산은 매년 총 출연금 예산의 6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출연사업의 많은 부분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공공기관 취합자료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 출연금 현황(2017~2022년)]

(단위: 억원, %)

공공기관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공기업	준시장형	1,921	1,431	1,388	1,205	1,554	956	△13.0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5,889	6,851	8,091	13,651	13,576	16,839	23.4
	위탁집행형	181,392	162,778	168,843	202,036	233,890	254,638	7.0
기타공공기관		54,182	56,552	58,036	62,007	74,821	83,319	9.0
공공기관 출연금	합 계(A)	243,385	227,612	236,357	278,900	323,841	355,752	7.9
	총출연금 대비비중(A/B)	69.9	68.2	65.1	59.3	66.3	66.7	-
	총 출연금(B)	348,121	333,820	363,234	469,950	488,652	533,181	8.9

주: 연도별 최종 예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출연 사업예산의 비목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의 비중이 유사하나, 일반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출연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난 5년간 일반출연금 예산이 연구개발출연금 예산보다 더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비목별 출연금 현황(2017~2022년)]

(단위: 억원, %)

출연금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일반출연금	152,064 (62.5)	136,528 (60.0)	152,790 (64.6)	184,644 (66.2)	215,286 (66.5)	234,747 (66.0)	9.1
연구개발 출연금	91,321 (37.5)	91,085 (40.0)	83,567 (35.4)	94,256 (33.8)	108,555 (33.5)	121,004 (34.0)	5.8
합 계	243,385 (100.0)	227,612 (100.0)	236,357 (100.0)	278,900 (100.0)	323,841 (100.0)	355,752 (100.0)	7.9

주: 1. 연도별 최종 예산 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 ()안은 비중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

1

출연사업 선정 관련 문제점

가. 사업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불명확성

「국가재정법」 제12조¹⁴⁾는 출연금을 기관의 운영과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 등 달성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출연금은 한정적이고 특정한 목적과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연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 현황]

기관명	출연금 지원 법적 근거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한국잡월드	「고용정책기본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화법」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법」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법」

14)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기관명	출연금 지원 법적 근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과학기술육성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정보화기본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법」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국립암센터	「암관리법」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육성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책기본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법」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법」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기본법」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산업진흥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진흥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국가재정법」상 출연금 규정과 공공기관의 출연 근거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이 출연금 목적을 한정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출연금 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출연금(비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둘째, 「국가재정법」은 출연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상태에서 출연사업이 수행되거나,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는 이러한 쟁점을 자세히 검토한다.

(1) 「국가재정법」의 한정적 출연금 목적 명시에 따른 사업출연금 법적 근거의 모호성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현재 출연금은 기관 운영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사업출연금, 금융성·민간기금출연금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2조에서 명시하는 출연 유형은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기관운영출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두 유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출연금에 대한 목적과 성질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제도상 상이한 출연 구분]

「국가재정법」상 출연 구분(목적)	「예산안 편성 지침」상 출연 구분
• 기관운영출연 •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	• 일반출연금 - 기관운영출연금 - 사업출연금 - 금융성기금 출연금 - 민간기금 출연금
	• 연구개발출연금

자료: 「국가재정법」,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 세부지침」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은 원칙적인 사항을 명기하고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지침」에 세부적으로 사업출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목적 출연금

의 법적 보호성은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사업출연금은 법에서 규정한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에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 목적 외의 출연은 전체 출연금 예산의 43.3%를 차지하고, 특히 사업출연의 경우 41.7%로 그 규모가 상당하며, 지속적으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연사업 유형 분류 현황(2022예산)]

(단위: 억원, 개수, %)

구분	기관운영 출연	비연구개발 사업출연 (사업출연)	연구개발 사업출연	금융성·민간 기금출연	합 계
출연금	22,987 (4.3)	222,159 (41.7)	279,357 (52.4)	8,678 (1.6)	533,181 (100.0)
사업수	143 (5.4)	676 (25.5)	1,819 (68.6)	14 (0.5)	2,652 (100.0)

자료: D-Brain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출연금 제도의 연혁상 자율성과 유연성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취지가 「국가재정법」에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출연금이 법에 규정된지 13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사업출연금을 기타의 출연 목적으로 포함시켜 해석의 영역으로 두기에는 사업출연예산의 편성 규모와 그 중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왜 출연금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출연의 법적 근거 미흡 및 출연 목적에 반하는 예산편성·집행

① 개요

「국가재정법」¹⁵⁾상 출연금이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설립법 또는 설치법)이 그 설립법 등에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경우나 둘째,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은 아니지만 동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개별법에 출연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경우이다.

첫째, 기관의 설립법에서 출연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출연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조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경우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학병원의 의학적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보조하며,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원리금 상환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은 아니나 특정 사업을 출연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기관의 설립 근거를 「민법」 제32조(비영리기관의 설립)에서 찾고 있으며, 에너지정보소통 기반조성 및 에너지문화 확산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기사업법」 제49조¹⁵⁾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의2¹⁷⁾에 따라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는다.

출연금은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가 넓고,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요하고 있다.

15)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의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6)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1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출연금은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될 수 있으며, 또한 법률에 따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출연 기관의 설립법과 특정 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법 및 연도별 출연예산 검토한 결과 출연의 법적 근거가 결여되었거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출연예산이 편성·집행된 사례와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출연예산이 편성·집행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② 사례분석1: 출연의 법적 근거 미흡

먼저,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례는 출연사업 수행기관의 선정 또는 위탁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수행기관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으나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법적근거 미흡 검토사례]

부처	사업명	검토 내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2021년 예산안)	일부 출연 기관 지원 근거 미흡
산업통상 자원부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2022년 예산안)	출연기관 선정의 법적 근거 미흡 (비목변경 예정)
농림수산 식품부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 발사업 (2021년 예산안)	출연기관 지원 근거 미흡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 결함 시정 (2020년 예산안)	법률개정을 통해 출연 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 안전위원회	울주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2021년 예산안)	법률개정을 통해 출연 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사례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사업 출연의 법적 근거 미흡¹⁸⁾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사업¹⁹⁾은 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 개의 내역사업(①국제협력 업무 수행 사업 및 국제기구 협력(부처 직접 수행), ②정보통신 장관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 콘퍼런스 개최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연), ③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으로 편성되었다.

세 개의 내역사업은 2019년도까지 민간경상보조(320-02)로 편성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위 세 개 내역사업의 경우 보조금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또는 2021년부터 동 사업의 비목을 사업출연금(350-02)로 변경하였으나, 편성된 출연예산의 일부의 경우 출연사업으로 운영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업(정보통신 장관회의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콘퍼런스 개최 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업(국제기구 활동 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²⁰⁾

18) 2021년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19)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지원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우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으로 설립법에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관의 고유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출연 근거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내역사업별 출연금 지원 근거]

출연 기관	출연의 법적 근거	내용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NIPA)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8조 (재원 등)	①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u>설립 및 운영</u> 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KISDI)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운영재원)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u>설립·운영</u> 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정보화 진흥원 (NIA)	「국가정보화기본 법」제14조 (한국정보진흥원 의 설립 등)	③정보화진흥원은 다음각 호의 사업을 한다. 11. <u>국가정보화,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u> ④국가기관등은 정보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KIS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제3항 (전자문서· 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③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u>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u> 를 위한 <u>사업</u>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①정보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지원을 효율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한다. ③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0. <u>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u> ④인터넷진흥원이 <u>사업을 수행</u>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사례2) 산업통상자원부의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의 세부사업인 ‘지진 연구시설 구축’ 사업 출연기관의 법적 근거 미흡²¹⁾

‘포항 지역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은 포항지진 피해 후속 조치로 지열발전부지에 심부지진계 등 지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지안전관리사업과 지진연구시설 구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지진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출연금(350-02) 및 기관운영출연금(350-01)등 총 7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고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에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은 「국가재정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기관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진연구시설 구축’ 사업의 비목을 출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3) 농림수산식품부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 사업 출연 지원의 법적 근거 미흡²²⁾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사업²³⁾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칭하여 소관 연구개발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해당 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한다.

그러나 사업의 수행체계상 사업관리는 독립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사업단은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참여기관에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기관의 연

21) 2022년도 예산안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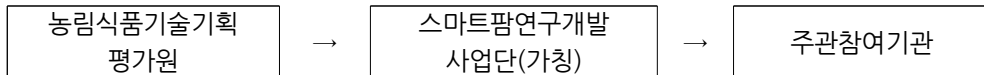
22) 「2021년도 공공기관 예산안분석시리즈Ⅲ」pp.55 ~62

23) 기존 스마트팜 R&D를 통해 개발한 2세대 스마트팜 표준모델의 품목(작목/축종)별 적용, ICT 기재 고도화 등 개발을 지원하고, 생육정보의 자동계측 및 생육정보와 환경·농작업·경영정보 등과의 통합 분석,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는 R&D 사업이다.

구비 사용 실적을 관리할 것으로 계획되었다.

즉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은 동 사업의 연구개발출연금을 사실상 집행·관리하는 기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개발 예산 집행체계]



[사업의 법적 근거]

사업의 법적근거	내용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농촌진흥법」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운영규정」 제22조(협약 및 출연금)	① 사업단은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위탁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후 재정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사업단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이 제3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한편,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의 출연 근거 없이 수행된 사업을 사후에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경우도 있다.

사례4)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 사업출연의 법적 근거 마련²⁴⁾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 사업은 제작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안전기

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제작결함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동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²⁵⁾

그러나 동 사업의 근거법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는 업무의 위탁과 출연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8조의3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업 대상에 제작결함 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동 사업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 사업의 법적 근거]

사업의 법적근거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u> 이 경우 제작자들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u>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u>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u>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u>,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u>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정 2020.6.23.>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4) 2020년도 예산안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25)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31억 4,100만원이다

사례5) ‘울주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²⁶⁾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출연 근거를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까지 현장지휘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사업출연금으로 출연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지휘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사업출연금으로 출연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²⁷⁾ 이후 2020년 현장지휘센터의 구축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및 출연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2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사업 근거 법률 개정내용]

사업의 법적근거	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u>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u>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6.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장비의 구축 및 관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40조(업무의 위탁)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1의2. <u>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장비의 구축 및 관리</u>

2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사업은 방사능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원자력시설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7) 2019년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 현장센터 구축관리 업무에 대한 출연근거 없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출연하지 않을 것(주의), 기 구축된 현장센터 등은 안전기술원과 협의하여 국유화 방안 등 적정조치를 취할것(통보)을 지적한 바 있다.

③ 사례분석2: 출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집행

출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집행 사례는 기관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운영출연금에 사업비 출연금을 편성하거나, 해당 사업 취지에 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출연 목적에 반하는 예산편성·집행 사례검토]

부처	사업명	검토 내용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2022년 예산안)	기관운영출연금 목적에 반하는 시설개선공사 예산 편성 및 사업목적에 반하는 시설개선 공사 예산 편성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 (2019년도 결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획평가관리비(연구개발출연금)의 목적에 반하여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편성(개선)
국무총리실	재정전문가포럼 운영 (2020년도 결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출연연구사업 취지에 반하는 예산 집행

사례1) ‘국립해양박물관운영’ 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예산 편성²⁸⁾

국립해양박물관은 기관운영출연금에서 박물관의 시설개선과 관련된 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출연금에서도 특정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전력시설 개선, 엘리베이터 설치, 건축물 안전관리,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 박물관 시설 개선 사업을 연례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 합리화에 편성된 사업출연금은 17억 6,300만원이며, 2022년에도 국립해양박물관 내 모든 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에너지 합리화 사업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에너지 합리화 사업은 전시공관 외에도 사무실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립해양박물관의 고유사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28)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Ⅱ」 pp.70~

사례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예산 편성·집행²⁹⁾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R&D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운영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인건비를 기관운영출연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기획평가관리비(연구개발출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고 있다.

기획평가관리비의 목적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성과 활용 촉진 등 R&D사업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로, 경직성 경비의 인건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기획평가관리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1) 및 예산배분추진계획(안)(2022년)에 따라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비 지원 및 운영을 위해 기획평가관리사업을 별도 신설하여 비목을 분리하여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획평가관리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R&D예산	기획평가관리비				
		인건비(비중)	경비	사업비	예비비	합계
2017	2,784	49.3(38.3)	27.1	50.8	1.5	128.7
2018	2,895	49.5(39.6)	27.4	41.2	6.9	125.0
2019	3,151	54.5(48.1)	27.3	29.9	1.6	113.3
2020	3,694	56.3(44.3)	19.3	51.3	0.1	127.0

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19년도 결산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 재인용

사례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문가포럼’ 사업의 출연 연구사업 취지에 반하는 예산집행³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전문가포럼’사업은 재정정책 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재정분야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책 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정책에 대한 전체적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29) 2019년도 결산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

30) 2020년도 결산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관의 일반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연구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외부 학회 등에서 작성하여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 결과의 심의를 받는 등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사업 운영을 하고 있어 출연 연구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³¹⁾³²⁾

나. 출연사업 재정지원 규정의 비일관성에 따른 출연의 법적 근거 확대해석

① 개요

「국가재정법」이나 개별 출연기관의 설립법 등 관련법을 살펴보면, 출연금에 대한 규정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출연금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이 일관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비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출연금의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이 어떠한 체계를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현행 출연금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 체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제1항은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31) 재정전문가 포럼 운영사업 연구용역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계약기간	금액	계약업체
1	보건의료서비스의 보편적 효율적 개선연구	2004.01~20.12.15.	49.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	주택시장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정부정책방향 모색	2004.01~20.12.15.	42.4	한국사회과학회
3	지속성장을 위한 거시재정 정책과제	2004.01~20.12.15.	42.4	한국사회과학회
4	한국노후소득보장제도 재평가와 합리화 실천방안 연구	2004.01~20.12.15.	35.0	한국정책학회
5	인구구조변화와 일자리 재정정책	2004.02~20.12.15.	35.0	한국경제학회
6	대학입시제도관련 쟁점연구	2004.02~20.12.15.	42.4	한국사회과학회
7	재정분권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모색	2004.02~20.12.15.	42.4	한국지방재정학회
8	기타2건		14.0	
	합계		303.4	

32)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외부전문가들과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진행을 위해서 위탁용역 형태의 연구수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일반 위탁용역과는 달리 연구 착수·중간 월례회의·최종보고회 등 연구수행 전단계에서 연구원 내부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출연 연구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기관의 설립과 운영뿐만 아니라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한국환경공단법」 제23조가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로 조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출연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 체계는 크게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출연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출연사업의 경우 ‘운영’에 대한 규정에 ‘사업’을 포함하여 출연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운영’은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일부 법에서도 ‘운영’과 ‘사업’의 의미가 같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5항³³⁾을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경우 운영과 사업에 대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설립 목적의 박물관을 비롯한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의 법체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고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운영’과 ‘사업’의 개별적 해석에 따라 사업출연금의 법적 근

33) 「과학기술기본법」

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거 유무가 달라질 수 있게 되며,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는 기관의 경우 ‘운영’에 사업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개별사업에 대한 비용의 근거를 달리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당 기관이 행하는 사업을 모두 출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대해석이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출연기관 재정지원 관련 규정 현황(예시)]

출연기관명	근거법	
	근거법률	설립·운영사업(업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책기본법」	○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 ×
국립광주과학관 등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법」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산업진흥법」	○ ○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법」	○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법」	○ ×

주: 2022년 4월 기준

② 사례분석

출연금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이 일관되지 못함에 따라 출연의 법적 근거를 확대해석한 사례와 출연 근거를 개선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교육부의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 사업 출연의 법적 근거 확대 해석³⁴⁾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³⁵⁾ 및 19조에 근거하여 2020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협의하였다. 동법 제16조제1항은 국가가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출연금 지급에 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근거인 동법 제19조제7항은 국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의 출연 근거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례2) 산업통상자원부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확산’ 사업의 출연 근거가 명확한 기관으로 이관³⁶⁾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확산’ 사업은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21년까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수행하던 사업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³⁷⁾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사업출연금이 지급되었다.

34) 2020년 예산안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

35)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36) 2022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그러나 2022년 예산안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사업의 법적 근거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동 법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 별도로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³⁸⁾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기반구축’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예산 집행부터 동 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가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이관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동 사업의 법적 근거의 미비를 사전에 방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3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수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3조(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8) 본래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출연 근거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라고 밝혔으나, 동 규정은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출연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출연할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개별사업까지 출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대해석에 해당한다.

[기후변화협약대응사업 내역사업 수행 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

내역사업	법적 근거	내용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확산 사업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운영 재원)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u>설립·운영에 드는 경비</u>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통계 및 분석기반 구축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한국에 너지공단의 설립 등)	②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u>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u> 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사례3) 교육부의 ‘사학혁신 지원 사업’ 출연의 법적 근거 개선

‘사학혁신 지원’ 사업은 사학의 민주성·공공성 확보를 선도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함으로써 법인 운영 개선을 통한 대학 발전의 선순환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성과를 공유하여 타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연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 사업출연의 법적 근거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법 제29조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운영에 사업을 포함시켜 확대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동 사업의 출연근거인 「사학진흥재단법」 제29조(경비부담)을 제29조(출연금)으로 전문개정(2022.3.25.부터 시행)하여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개선하였다.

[사학혁신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법적 근거	내용
「한국사학진흥 재단법」 제29조	제29조(경비 부담) 국가는 재단의 <u>운영에 필요한 경비</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제29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u>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u> 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단일 세부사업에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가 혼재된 출연 예산 편성·집행

예산상 비목별 구분에 따른 출연금³⁹⁾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분류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급되는 출연금인 목적성 출연금으로 연구개발출연금과 일반출연금 중 사업출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금이고, 사업출연금은 비연구개발사업인 정책 목적 수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관운영출연금은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금을 의미한다.

[출연금 구분에 따른 개념]

구분		개념	사업(예시)
목적성 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R&D)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u>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u>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출연금	국방기술품질원기술기획(R&D)
	사업출연금	비연구개발과 관련하여 <u>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u> 법적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출연금	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2단계건설사업
기관운영출연금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의 인건비,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이러한 출연금 분류가 항상 상호배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출연금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에는 하나의 세부

39) 출연금의 예산상 비목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출연금(350)은 기관운영출연금(350-1), 사업출연금(350-2),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 민간기금 출연금(350-04)로 구성되며, 연구개발출연금(360)은 연구개발인건비(350-01),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 연구개발건축비(360-03),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360-06)로 구분된다.

사업에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상경비 성격의 출연금과 사업비 출연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기관운영출연금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기관운영출연금은 일반출연금 중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가 주로 편성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비가 포함되고 있다. 이 경우 목적성 사업출연금과 구분이 모호해진다.

또한 사업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건비 등이 함께 포함되어 편성됨에 따라 하나의 세부 사업에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가 혼재되어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사업비가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출연금의 경우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가 함께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발생한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출연금의 기관운영비, 사업비 분리 및 관리규정 현황]

구분		정부 직접사업	공공기관 출연금
기관 운영비	사업 분리	○ 기본경비(인건비, 경상경비)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 인건비, 경상경비는 주로 기관운영출연금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출연금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음 ○ 일반적으로 내역사업 단계에서 구분
	관리 규정	○ 총인건비 제도 등 - 기본경비 지출한도액 설정 - 집행실적부진, 예타규정 위반 시 기본경비 감액	○ 인건비, 경상경비 증액 한도 규제 ○ 총인건비 인상률과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조정
	세부 내용	○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 인발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

구분		정부 직접사업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절차	○ 법령상 정부 결산 절차에 따라 정산 실시	○ 일부 기금(고용보험기금) 편성 출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 경우 정산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 부재
사업비	사업 분리	○ 정부 기본경비 사업에는 사업비 가 미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별도 편성	○ 주로 사업출연금에 편성되고 있으나 기관운영출연금에 고 유 목적 사업비가 포함
	관리 규정	○ 정부 예산편성지침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세부 내용	○ 공사비, 설계비, 연구비 등	○ 인건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자료: 「2021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을 바탕으로 제작됨

2017~2022년 편성된 예산의 검토를 통해 기관운영출연금과 일반사업비출연금
에 인건비와 경상경비 성격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혼재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운영비와 사업비가 혼재된 출연예산 편성(예시)]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도	기관운영출연금(350-01)		
		경상경비	사업비	총 출연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7	7,973	5,057	13,030
	2018	9,892	4,106	13,998
	2019	10,151	5,880	16,031
	2020	11,303	5,814	17,117
	2021	14,141	-	14,141
	2022	11,605	-	11,605
한국가스안전공사 ¹⁾	2017	20,828	22,156	42,984
	2018	22,290	25,803	48,093
	2019	25,966	26,829	52,795
	2020	33,869	36,055	69,924
	2021	33,843	215	34,058
	2022	38,615	-	38,615

기관명	연도	기관운영출연금(350-01)		
		경상경비	사업비	총 출연금
국립항공박물관	2020	5,503	3,857	9,360
	2021	9,031	3,975	13,006
	2022	9,030	-	9,030
한국교통안전공단	2017	20,828	22,156	42,984
	2018	22,290	25,803	48,093
	2019	25,966	26,829	52,795
	2020	33,869	36,055	69,924
	2021	33,843	215	213,603
	2022	38,615	-	38,615
기관명	연도	사업비출연금(350-02)		
		경상경비	사업비	총 출연금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017	-	-	-
	2018	116	46,696	46,812
	2019	873	55,959	56,832
	2020	806	51,206	52,012
	2021	468	12,820	13,288
	2022	168	13,563	14,031

주: 1) 경상경비와 사업비의 구분이 어려워 지출 대비 규모 비중으로 산출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를 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세부사업 출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경상경비, 경영평과 성과급 등인 기관운영비와 기관고유사업비인 자격검정사업, 외국인고용관리사업, HRD확산 및 역량강화 등이 하나의 세부사업(사업출연금, 350-02)에 내역사업 단계로 편성되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출연 예산(2022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내용	2022 예산
350-2	경상운영비	• 인건비, 경상경비, 경영평가 성과급 등	128,905
	자격검정사업	• 검정시행 및 관리, 출제관리, 채점관리, 자격증 발급 등	104,560
	외국인고용관리 사업	• 입국지원 및 취업교육, 외국인	16,117
	HRD확산 및 역량강화	• HRD직무역량, HRD 교육센터건립 등	8,964
	국제교류협력	• 기술교류 및 국제행사, UAE 및 한독 협력사업, 개도국 기능올림픽관리자초청 연수 등	924
	자체수입	• 자격검정사업 수입, 외국인고용관리 수입 등	△118,629

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기관운영비와 기관고유목적사업비를 각각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즉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로, 기관고유사업비인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역사화해와 동아시아 정립 연구 등은 사업출연금(350-02)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출연 예산(2021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내용	2022 예산안
350-01	경상운영비	○ 인건비, 경상경비 등	10,742
350-02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 고조선·고구려·발해연구 및 북방사 연구	751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 일제 침탈사 연구	1,910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 독도·동해 연구 및 확산	517

구분		세부 내용	2022 예산안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연구	○ 역사 회해 모색 연구	432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구축	○ 역사자료 확충 및 기록물 관리, 아카 이브 구축, 홈페이지 관리	1,691
	연구관리 및 지원	○ 연구역량 강화 위한 연구 정책 기획 및 연구지원, 정기간행물, 학술서 발간	244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	○ 동아시아 교원연수, 역사교육, 독도 체험관 환리운영, 자료개발 등	2,166
	교류 및 홍보 사업	○ 역사 교양총서 및 영문저널 발간, 디 지털 미디어 기반 역사왜곡 대응	1,801
	자체수입	○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잡수입 등	△944

공공기관의 출연예산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마다 세부사업 편성에 있어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일 세부 사업에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을 함께 편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경상경비 성격의 경비로 편성·집행할 유인이 크다. 또한 일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연금 외에는 법적으로 매년 정산하는 절차가 없어 공공기관 사업출연금을 기관운영 용도인 경상경비 성격으로 편성·집행하는 경우 정확한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업비 출연금을 기관운영 용도로 편성·집행한 경우]

기관명	지적사항
국가철도공단	- 경상경비에 교육훈련비 등 기관운영경비에 해당하는 혁신인재육성비를 미포함하고 사업비로 분류하여 편성·집행 2019년 결산기준, 직원 대상 교육훈련 사업인 혁신인재육성비 32억 8,6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집행
국립해양박물관	- 특정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박물관 전력시설 개선 등의 박물관 시설 개선 사업을 사업출연금에 연례적 편성·집행 2018년 국립해양박물관 전력부하 개선 공사 용역비 1억 5,200만원, 2019년 국립해양박물관 공조기 개선 2억 8,300만원 등 박물관 시설 개선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출연금에 편성·집행
한국산업인력공단	- HRD확산 및 역량강화 사업비를 연례적으로 경상운영비 성격인 신규직원 교육훈련비, 학위과정 운영 등의 용도로 편성·집행⁴⁰⁾ 2019년 HRD 컨설팅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 교육비 등 1억 8,800만원, 신규직원 교육 및 단체복 구매, 임용식 등 3억 2,000만원 편성·집행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	- 국제협력사업 사업비를 활용한 내부 직원 대상 학위과정 운영 - 산업안전보건의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직원 대상 학위과정 운영에 편성·집행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 사업 목적 및 사업비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직원 학위과정 운영
한국국제협력단	- 국제협력증진 사업비의 경상운영비 성격의 예산 항목 편성·집행 - 국제협력증진사업에 해외사무소 감사,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수검대응, 전문인력개발 등 경상경비 성격의 경비 편성·집행

자료: 「2021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 pp.65~66

40)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동 사례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으로 2021년 이후 해외학위과정 운영을 폐지하여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나. 수행기관 중심의 출연금 지원의 문제

① 개요

출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그 설립법에서 재정지원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정지원 방식이란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재원충당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규정 체계는 출연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거나, 출연 또는 보조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사업 등 출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설립법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설립법인 「한국환경공단법」에서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을 ‘출연 또는 보조’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은 크게 ‘출연’ 및 ‘출연 또는 보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방식을 출연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출연금 지원에는 법률상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기재부장관의 승인시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⁴¹⁾

이러한 출연금 지원의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과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지원의 형태를 출연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원칙적으로 출연금과 보조금을 함께 편성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반할 수 있다.

41)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는 ①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②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출연금을 계상한 기관에도 예외적으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별 규정상 재정지원 형태 및 예산편성 현황(예시)](2016~2022년)
(단위: 백만원)

기관명	법률상 재정지원 형태 (출연, 보조)	예산편성 현황		
		연도	출연 사업	보조 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연	'16~'22	○	○
한국환경공단	출연 또는 보조	'16~'22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연	'16~'20	○	○
		'21~'22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연 또는 보조	'16~'19	○	-
		'20~'21	○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연	'16~'22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또는 보조	'16~'22	○	-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18~'22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16~'22	○	-
한국소비자원	출연	'16~'22	○	-
근로복지공단	출연	'16~'22	○	○
재외동포재단	출연	'16~'22	○	-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16~'22	○	○
한국고용정보원	출연	'16~'22	○	-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출연	'16~'22	○	-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	'16~'20	○	○
		'21~'22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연 또는 보조	'16	○	-
		'17~'22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출연 또는 보조	'16~'19		○
		'20~'22	○	-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연	'16~'22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	'16~'21	○	○
		'22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출연	'16~'22	○	○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출연금과 보조금을 함께 계상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연금 지원에 대한 한계와 예외를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동시에 받도록 할

경우 중복적인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중복 지원을 예방하고, 다른 한편으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출연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규정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목적 및 성질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 우선하여 수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재정지원 방식을 결정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 방식의 전환에 대한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출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보조금으로 수행되던 사업이 출연금으로 변경될 경우 집행기관의 재량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재정통제가 약화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앞서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교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조금은 출연금에 비해 그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이처럼 보조금으로 수행되던 사업이 출연사업으로 예산과목 변경이 이루어지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재량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기관의 편의가 증대되는 반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집행잔액 반납 등에 관한 통제가 약해지거나 실집행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한다.

② 사례분석

사업의 목적과 성질에 대한 정책적 고려보다 수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재정지원의 성격을 변경함으로써 출연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수행기관의 성격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의 변경⁴²⁾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조금과 출연금 예산을 함께 계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맞을 수 있지 않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라, 부처 소관의 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아래의 사업들을 모두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 질의의 취지는 보조금 예산을 모두 출연금으로 변경하라는 의미까지 내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조금 예산뿐 아니라 민간위탁사업비 예

42) 「2020년도 예산안위원회별 분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pp.43~

산까지 사업출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국정감사의 질의 사항과도 차이가 있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단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출연기관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서 업무유관 및 전문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및 출연기관이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목 변경 사업 중 빅데이터플랫폼및네트워크구축,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등 많은 사업이 민경경상보조 또는 민간위탁사업비 예산 중 상당금액이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재위탁사업자에게 재교부되었으므로, 출연기관에도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⁴³⁾

[2020년 사업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업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부사업명	회계명	'19년 예산과목	'20년 예산과목
페어퍼리스촉진지원	정진기금	민간위탁사업비	사업출연금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정진기금	민간위탁사업비	"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정진기금	민간위탁사업비	"
IT활용 촉진(정보화)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	방발기금	민간위탁사업비	"
		민간경상보조	"
빅데이터플랫폼및네트워크 구축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정진기금	민간위탁사업비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정진기금	민간위탁사업비	"
지능형초연결망인프라기반조성	방발기금	민간경상보조	"
10Giga인터넷서비스 촉진 사업	정진기금	민간위탁사업비	"

43)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사업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인터넷환경고도화, 페어퍼리스촉진지원 및 IT 활용 촉진 사업은 개별 법률에 출연근거가 있는 경우로 사업출연금으로 전환한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세부사업명	회계명	'19년 예산과목	'20년 예산과목
지능정보네트워크용 광통신부품사용화 실증확산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3D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글로벌ICT혁신클러스터 조성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ICT창의기업육성	방발기금	민간경상보조	"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정밀의료 산업기반구축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방발기금	민간경상보조	"
SW산업기반확충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
공공SW사업선진화	정진기금	민간경상보조	"
VRAR콘텐츠산업육성	방발기금	민간경상보조	"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방발기금	민간경상보조	"
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활성화	방발기금	민간경상보조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방발기금	민간경상보조	"
버스 Wi-Fi 확대 구축	방발기금	민간경상보조	"
이용자전화사기대응체계구축	방발기금	민간경상보조	"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품질평가	방발기금	민간경상보조	"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방발기금	민간경상보조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p.44

사례2) 사업 목적 고려에 우선한 수행기관 성격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의 결정⁴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5.18민주화 운동,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체계적인 치유활동을 위한 관심과 제도가 부재함에 따라 일차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2020년 신설된 사업으로 9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지원방식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 지방자

44)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pp. 81~84

치단체 보조사업 형태로 수행될 예정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새로 운영되는 센터는 제주 4.3평화재단에 출연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사업내용을 가진 내역사업간 지역별로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이라는 별개의 사업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은 세부 절차 및 정산 등에서 차이가 있어 상이한 지원 형태로 운영시 동일한 사업의 목적과 효과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출연사업의 경우 지방비가 없어 지원비율이 따로 없지만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보조율과 유사하게 전체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소요 비용 총액의 50%는 국비로 부담하고 50%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두 지역에서의 사업이 동일한 목적과 내용임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사업이나 출연사업 형태로 통일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별로 동일한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⁴⁵⁾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광주)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제주)
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616	0
	사업출연금 (350-02)	0	327
지원비율		50 (국고보조율)	50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소요비용 총액 대비)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 예산안 위원회별분석 행정안전위원회」 재인용

45)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법」 제정(21.12.7.)과 이에 따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통해 내역사업간 지역별로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이라는 별개의 사업형태로 운영되는 지원방식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 공공기관 출연금 관리 현황

출연금은 그 유형에 따라 정산 및 사후관리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첫째, 앞서 제시한 출연금 분류에서 목적성 출연금 중 하나인 연구개발출연금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⁴⁷⁾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서는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연구개발비 사용 및 평가 등을 규정한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⁴⁸⁾ 정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은 이러한 성격의 연구개발 출연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산 등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따른다.

[연구개발출연금의 사후정산 관련 규정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제3장 공공기관 출연금 관리체계 관련 문제점은 국회예산처의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분석」중 Ⅵ. 공공기관 출연금 분석의 내용이다.

47)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까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준용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48)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5.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3. 일반출연금(350목)·연구개발 출연금(360목)

13-2. 기타출연금

나. 세부지침 中 <정부출연연구기관>

- 이자수입은 인건비,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경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결산잉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연구개발적립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기관발전사업에 사용하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편성 집행지침」

- 회계연도 잉여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필요시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전년도 집행잔액 처리의 기본 방향은 동일한 예산항목을 이월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결산잉여금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회계기준서와 해설서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각 연구기관별로 제정한 회계규정에 따른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212-218

둘째,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의 경우 연구개발출연금과 같이 출연금 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출연금 정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사업출연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⁹⁾

한편, 기관운영출연금의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해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법령출연금(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의 사후정산 관련 규정 현황]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3. 일반출연금(350목) · 연구개발 출연금(360목)

13-2. 기타출연금

나. 세부지침 中

- 비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212-218

나. 통일된 출연금 정산 규정이 없음에 따라 상이한 공공기관별 정산

정부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도 말 사업 종료 시 출연금에 대한 관리·정산은 연구개

49)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이전에는 ‘비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관련 법령에 구체적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출연금의 집행시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에 있다고 밝혔다.

발출연금과 기관운영지원 성격의 출연금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비교적 일률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사업비출연금은 기관마다 관련 법령이나 소관부처 및 해당기관의 지침·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통적인 규율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⁵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 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연구개발출연금은 제외한다), 일정한 정산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① 법령에 따른 출연사업 정산, ② 소관부처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출연사업 정산, ③ 위탁계약 협약에 따른 출연사업 정산, ④ 정관 또는 회계규정에 따른 출연사업 정산, ⑤ 국고보조금 정산 절차를 준용하여 출연사업을 정산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출연금 사업별로 상이한 정산체계를 갖추거나 출연금 정산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임에도 나름의 정산절차를 통해 사업비 잔액 및 이에 따른 이자수익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기관 등 공공기관별로 또는 출연사업별로 정산방식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사업비 출연금을 지급받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 및 사후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별사업 출연금 정산 규정 현황]

구분	기관	출연금 정산 및 사후관리 규정
① 법령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잉여금의 처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85조의4(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금)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50) 다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사업출연금에 대해 관련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분	기관	출연금 정산 및 사후관리 규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2조(잉여금처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한국국제협력단 정관」 제19조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4조(잉여금의 처리)
② 규정 및 지침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16조(사업비 이월), 제22조(정산경과의 통보 및 반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월드프렌드 NIPA자문단 해외파견사업 시행지침」 제19조(경비의 지급 및 정산)
	한국교통안전공단	「목적성출연금 관리지침」 제8조(출연사업의 집행잔액 처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한국에너지공단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해외사업 운영지침」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제12조(지출절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3(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등) 등
	한국여성과학 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11조(출연금 사용잔액 환수)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 및 수행관리 지침」,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 및 수행관리 지침」 등
	서울대학교병원	「출연금관리규정」, 「총사업비관리규정 및 지침」
③ 계약 협약	한국어촌어항공단	부처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처와의 협약에 따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일반)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사업 협약서 제9조(사업비의 정산)

구분	기관	출연금 정산 및 사후관리 규정
④ 정관 및 회계규정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정관」 제33조(잉여금의 처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관」 제12조(결산 보고), 제42조의3(경영실적의 보고)
	국립광주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정관」 제32조(잉여금의 처분), 「국립광주과학관 회계규정」 제58조(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분)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정관」 제32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구과학관 회계규정」 제58조(잉여금 또는 결손금 처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관」 제16조(잉여금의 처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회계규정」 제71조(잉여금의 처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정관」 제34조(잉여금의 처리) 및 「회계규정」 제73조(잉여금의 처리)
⑤ 보조금 관리규정 준용	창업진흥원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한국관광공사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한국수산자원공단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한국한의학진흥원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자료: 각 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그러나 일부기관의 경우 출연금 사업비에 대한 정산규정이 없었으며, 이들 기관의 경우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이자수익을 기관의 자체수익에 반영하여 기관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법령출연금 정산 규정 미비 기관 현황(예시)]

구분	개별 통장	정산반납		활용
		사업비잔액	이자수익	
충북대학교 병원	○	×	×	사업비: 이월 이자수익: 원내 유보
한국자산관리공사	×	×	×	사업비: 이월 이자수익: 기관수입으로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기관내 차년도 자체수입처리

주: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은 제외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편, 상이한 출연금 정산의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동일한 기관에 편성된 출연금이 기금회계와 일반회계임에 따라 상이한 정산체계를 갖게 되기도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사업비 출연금(목적성 출연금)을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지원받고 있다.⁵¹⁾ 기금회계로 지원받는 출연금 사업인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사업, 일학습병행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⁵²⁾에 따라 출연금 사업비 잔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 반납하고 있으나, 일반회계로 지원받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 잔액 및 초과수입(이자수입 등)은 결산잉여금으로 차년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 서울대학교병원 종합진료지원동 건립사업, 서울대학교병원본관 재배치 및 환경 개선 사업, 서울대학교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임상연구센터 건립사업, 분당서울대병원 복합진료지원 등 6개의 이월이 발생한 출연금 사업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 출연금 관리규정」⁵³⁾에 따라 사업비 잔액은 이월하고 있으며, 내부원칙에 따라 이자수익은 기관이 보유하다 사업 완료시 정산을 통해 이자수익을 포함한 사업비 잔액을 반납(또는 예정)하고 있다.⁵⁴⁾

반면, 충북대학교병원의 경우 의료생명진료연구동 건립사업, 통합로비 설치사

51)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도 지원받고 있으나 사업출연금(목적성 출연금) 중 기금회계로 지원받는 사업과 일반회계로 지원받는 사업만을 비교하였다.

5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53) 「출연금관리규정」

제4조(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이를 병원의 자체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용도는 병원의 기본 시설, 설비 등에 한한다.

제7조(이월) 출연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4)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자수익 정산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2017년부터 내부원칙으로 정하여 이월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익 사업기간 종료후 반납한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종료된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미집행 사업비 잔액 및 이자 전액을 반납 완료하였다.

업 등 2개의 이월이 발생한 출연금 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경우 이월하고, 이자수익의 경우 계속해서 원내에 유보해두고 있다.⁵⁵⁾

[출연금 정산체계의 상이한 사례]

구분		정산 통장	정산반납		활용
			사업비잔액	이자수익	
한국산업 인력공단	일반회계	×	×	×	이자수익: 당해연도 수지차예산으로 계상
	기금회계	×	○	○	사업비 및 이자수익: 정부반납
서울대학교 병원		○	△	△	사업비 및 이자수익: 이월하다 사업완료시 정부반납
충북대학교 병원		○	×	×	사업비: 이월 이자수익: 원내 유보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이처럼 출연사업별로, 공공기관별로 정산체계가 상이한 것은 연구개발출연금과 같이 통일된 상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출연금 정산 규정의 불명확성

출연 기관 중 사업비출연금 정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출연금의 투명한 정산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출연금 집행에 따른 사업비 잔액, 사업비 이월에 따른 금융성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출연금 정산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관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출연금 정산을 포함한 관리에 관한 통일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55) 충북대학교병원의 경우 사업비의 경우 계속사업의 경우 이월하고 있으며, 사업비 이월에 따른 이자수익의 경우 정산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어 기관의 수입이나 다른 사업에 계상하지 않고 유보해두고 있는 상태이다.

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2조(출연금)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연금 지원 근거 법령]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출연사업 중 최근 5년간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운영, 해외의료진출지원, 의료시스템수출지원사업,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례적 이월 발생 출연 사업]

구분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운영(R&D)	해외의료 진출지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의료정보 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프로그램명	보건산업육성	보건산업육성	보건산업육성	보건산업육성
단위사업명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지원	글로벌 헬스케어육성	글로벌 헬스케어육성	보건산업정책
세부사업명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운영	해외환자 유치지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의료정보기반구 축 및 융합지원
코드명	3032-300	3037-300	3037-301	3033-301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러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는 4개 세부 사업의 최근 5년간 연례적 사업 이월에 따른 이월금은 총 50억 1,100만원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례적 이월 발생 출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22,130	21,684	446	0
	해외의료진출지원	2,479	2,467	12	0
	의료시스템수출지원	2,952	2,650	302	0
	의료정보 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	-	-	-
	소계	27,561	26,801	760	0
2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22,082	21,835	247	0
	해외의료진출지원	3,468	3,402	66	0
	의료시스템수출지원	4,202	3,702	500	0
	의료정보 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	-	-	-
	소계	29,752	28,939	813	0
20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22,551	22,138	413	0
	해외의료진출지원	3,532	3,359	173	0
	의료시스템수출지원	4,712	4,209	503	0
	의료정보 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	-	-	-
	소계	30,795	29,706	1,089	0
20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23,099	22,682	417	0
	해외의료진출지원	4,609	4,551	58	0
	의료시스템수출지원	5,364	5,003	361	0
	의료정보 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480	353	127	0
	소계	33,552	32,589	963	-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23,971	23,852	119	0
	해외의료진출지원	4,125	3,787	338	0
	의료시스템수출지원	5,706	4,860	846	0
	의료정보 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363	280	83	0
	소계	34,165	32,779	1,386	0
합계		155,825	150,814	5,011	0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연금의 정산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관」 제16조(잉여금의 처리)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회계규정」 제71조(잉여금의 처리)를 따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연금 정산에 관한 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관」

제16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황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회계규정」

제7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황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동 정관 및 회계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금융수익을 기관 이월손실금 보전 및 차입금 상황에 충당하는 등 기관의 자체수익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비 처리방식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상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⁵⁶⁾, 수지차 보전기관이 아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비를 정산하지 않고 정관 및 회계규정에 따라 사업에 따라 잉여금을 기관의 자체 수익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56)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中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2. 세부지침.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세입에 반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례적 이월 사업비 출연금 정산 여부]

구분	개별 통장	정산반납		활용
		사업비잔액	이자수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	×	×	사업비: 이월 이자수익: 기관의 수입 처리
해외의료진출지원	×	×	×	사업비: 이월 이자수익: 기관의 수입 처리
의료시스템수출지원	×	×	×	사업비: 이월 이자수익: 기관의 수입 처리
의료정보 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	×	×	사업비: 이월 이자수익: 기관의 수입 처리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2020년 기간 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출연사업 운영에 따른 금융수익을 자체수익화 한 금액은 2016년 2,000만원, 2020년 2,3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 이후 기관 사업운영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연례적 이월 사업비에 의한 금융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20년 기준 64억 5,200만원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연 사업비 이월에 따른 금융수익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이자수익	20	16	24	31	23
당기순이익	114	1,597	2,633	597	565
미처분이익잉여금	3,142	4,828	6,921	5,871	6,452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관 내 잉여금 처리와 관련하여 잉여금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목적성출연금에 대한 잉여금 및 출연금을 통해 발생하는 금융성 이자수익에 대해 해당 사업의 차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기관 내부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⁵⁷⁾

또한 상이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 사업이 개별 통장을 이용하여 운용하고 있지 않아 각각의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사후절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개별 계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⁵⁸⁾

②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3조의3에 따라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5(운영재원)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출연금 지원 근거 법령]

「약사법」

제68조의5(운영재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지원사업⁵⁹⁾을 통해 인건비, 기본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연례적으로 출연 사업비에 대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57)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법제처가 발간한 '2021년도 법령입안심사기준' 중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익수입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58)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분리되어 있던 출연금 사업(해외환자유치지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의료정보 기반구축 및 융합지원)들이 2021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운영(360)으로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2022년 기관운영출연금(350)은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의 비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9) 코드: 일반회계 2032-30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6	8,900	8,620	280	-
2017	8,625	8,249	376	-
2018	9,534	8,678	857	-
2019	11,656	10,323	1,333	-
2020	12,861	11,692	1,169	-
2021.7	10,604	7,297	-	-

자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연례적 이월이 발생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시키고 있으며, 기관의 「회계규정」 제83조 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결산결과 남은 사업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관이 출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시킨 금융수익에 대한 처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회계규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회계규정」 제83조(잉여금의 처리) 의약품안전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이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을 기관의 잡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연례적 이월 사업비 출연금 정산 여부]

구분	개별 통장	정산반납		활용
		사업비잔액	이자수익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지원	×	×	×	사업비: 이월 이자수익: 이월 및 잡수입으로 계상

자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라. 목적성출연금의 사업비 잔액 및 발생 이자의 목적에 반하는 사용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해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법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금 지원 근거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들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주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출연사업 중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은 총 8개 사업이나, 기금으로 출연받는 5개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에 따라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이 있는 경우 정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금 출연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사후 처리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2. 기금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4.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 ④ 보험연도 내에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출연금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출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반회계 출연사업 중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사업, 해외취업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사업 등 3개 사업이다. 이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사업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사업으로 단위사업을 같이하고 있으나,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달리하는 개별 출연사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연례적 이월 발생 출연 사업(일반회계)]

구분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해외취업지원
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프로그램명	고용창출 및 훈련	고용창출 및 훈련	고용창출 및 훈련
단위사업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청년진로 및 취업지원
세부사업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해외취업지원
코드명	1066-307	1066-500	1051-304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러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받는 일반회계 사업의 최근 5년간 연례적 사업 이월에 따른 이월금액은 총 818억 8,300만원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월사업(일반회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6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11,643	109,697	6,542	3,180
	해외취업지원사업	45,235	35,533	7,739	1,963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3,233	3,095	123	15
	소계	160,111	148,325	14,404	5,158
2017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11,643	109,697	610	1,336
	해외취업지원사업	50,289	39,596	7,847	2,846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3,516	3,510	0	6
	소계	165,448	152,803	8,457	4,188
2018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13,205	105,242	7,054	909
	해외취업지원사업	55,379	44,144	8,414	2,821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3,733	3,720	0	13
	소계	172,317	153,106	15,468	3,743
2019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33,826	122,701	9,931	1,194
	해외취업지원사업	61,499	50,534	7,967	2,998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4,058	3,989	51	18
	소계	199,383	177,224	17,949	4,210
2020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46,241	124,183	19,072	2,986
	해외취업지원사업	56,239	46,647	6,533	3,059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5,223	5,214	0	9
	소계	207,703	176,044	25,605	6,054
2021.7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53,214	84,267	-	-
	해외취업지원사업	55,102	22,403	-	-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6,474	4,010	-	-
	소계	214,790	110,680	-	-
합계(2016~2020년)		904,962	807,502	81,883	23,35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반회계 출연사업의 경우 기금 출연사업과 달리 출연금에 대한 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상위의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비 잔액과 연례적 이월에 따른 금융수익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에 따라 기관의 당해연도 및 차년도 수입예산으로 계상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례적 이월 사업비(일반회계) 출연금 정산 여부]

구분	개별 통장	정산반납		활용
		사업비잔액	이자수익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X	X	X	사업비 및 이자수익: 결산잉여금으 로 차년도 수입예산으로 계상
해외취업지원사업	X	X	X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화)	X	X	X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지차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으로, 이는 정부의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 입장료 등에 따른 자체 수입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정부가 출연, 보조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체수입예산이란 검사료, 교육수수료, 기술컨설팅 등의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임대료, 잡수익 등 사업 외 수익을 포함한다.

이러한 수지차보전방식 지원기관의 목적과 지침상 자체수익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수지차 지원 기관의 자체수입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한 사업수익, 사업외 수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목적성 사업출연금에 대한 발생 이자분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사업비 잔액과 이자 수입이 해당 사업의 차기연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사업에 포함된 다른 사업에 반영되고 있어, 사업출연금에 따른 이자수익이 다른 단위사업 예산편성 시 자체사업수익으로 계상하여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출예산에서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출연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수지차보전기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정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이자수입을 수입예산에 반영하여 해당 금액 만큼 국가 출연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운영지원과 관련된 출연금 외에 특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성 사업 출연금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기관의 자체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절차를 거쳐 차기의 해당 사업비에 포함하는 등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취업지원사업의 경우 공단의 타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이월금액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⁶⁰⁾ 매년 사업비의 이월과 불용이 예산 현액 대비 유사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연수과정이 중심인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연수 과정이 6개월 이상 장기인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연도 불일치 및 불용액 발생 등을 감안하여 실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⁶¹⁾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결산 및 2022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16	36,770	39,240	6,624	45,235	35,533	79.5	1,963
'17	41,550	43,200	7,739	50,289	39,596	80.9	2,846
'18	37,920	48,070	7,847	55,379	44,144	79.7	2,821
'19	51,485	53,885	8,414	61,499	50,534	82.2	2,998
'20	55,064	48,272	7,967	56,239	46,647	82.9	3,059
'21.7	48,569	48,569	6,533	55,102	22,403	40.7	-
'22 (예산안)	50,567	-	-	-	-	-	-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른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출연금 사업에 대하여 개별 사업 통장을 구비하지 않고 단일 통장으로 3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60)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지원사업 이월예산은 연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과정으로 연수과정 수료 후 취업 인센티브 집행으로 인해 이월이 불가피하며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집행률은 이월예산 지출 반영시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61)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해 타사업에 비해 이월금액이 높아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를 위해 K-Move스쿨 예산 운용구조 변경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있어,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5년간 (2016~2020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반회계 출연금에 대한 연례적 사업 이월에 따른 누적 금융수익은 35억 8,800만원이며, 현재 출연금 관리 체계상 사업별로 이자수익을 구분할 수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회계 출연사업에 따른 금융수익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610	636	873	939	530	3,588
해외취업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따라서 사업 목적별 예산의 운용과 정산을 통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목적성 사업출연금의 이자수익이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계상되어 특정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이 해당 사업과 상관없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정부 재정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활용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⁶²⁾

②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62)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반회계 출연금을 포함한 공단 예산에 대한 결산 내역을 국회 결산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을 비롯한 초과수입 발생분 등은 기관이 임의로 집행하지 않고, 정부지침에 따라 차년도 수입예산에 계상하여 그만큼 정부출연금 규모를 적게 편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차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정부 재정의 효율성 목적에 맞게 관리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지원 근거 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6조(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은 8개 단위사업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은 5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연례적 이월 발생 출연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국국제협력단 연례적 이월 발생 출연 사업(일반회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명
국제개발 협력 (한국 국제 협력단 출연)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베트남ODA	1631-401
		인도네시아ODA	1631-402
		캄보디아ODA	1631-403
		방글라데시ODA	1631-405
		라오스ODA	1631-407
		스리랑카ODA	1631-408
		네팔ODA	1631-409
		파키스탄ODA	1631-410
		아프가니스탄ODA	1631-413
		아시아비중점국가그룹ODA	1631-414
		미얀마ODA	1631-415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가나ODA	1632-401
		에티오피아ODA	1632-404
		모잠비크ODA	1632-405
		르완다ODA	1632-407
		우간다ODA	1632-408
		아프리카비중점국가그룹ODA	1632-409
		세네갈ODA	1632-411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콜롬비아ODA	1633-401
		페루ODA	1633-402
		볼리비아ODA	1633-403
		파라과이ODA	1633-404
		중남미지역비중점국가그룹ODA	1633-405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명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우즈베키스탄ODA	1634-401
		아제르바이잔ODA	1634-402
		이라크ODA	1634-403
		팔레스타인ODA	1634-404
		중동CIS지역비중점국가그룹ODA	1634-405
	글로벌프로그램	해외봉사단ODA	1635-402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출연사업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연례적 이월
이 발생한 사업비는 675억 4,700만원이며, 불용된 사업비는 545억 4,300만원이다.

[한국국제협력단 연례적 이월사업(일반회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6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43,295	134,849	7,453	993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01,301	98,520	2,593	189
	중남미지역국가원조	42,089	41,338	739	12
	중동CIS 지역 국가원조	47,836	41,246	6,418	172
	글로벌 프로그램	119,550	119,535	0	15
	소계	454,071	435,488	17,203	1,381
2017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26,696	122,078	2,804	1,813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01,100	99,784	1,172	144
	중남미지역국가원조	38,779	38,014	556	210
	중동CIS 지역 국가원조	47,108	43,377	3,481	250
	글로벌 프로그램	132,646	130,294	1,304	1,048
	소계	446,329	433,547	9,317	3,465
2018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25,545	117,769	4,857	2,919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05,071	101,159	3,315	596
	중남미지역국가원조	55,940	54,959	393	588
	중동CIS 지역 국가원조	53,747	35,525	18,037	183
	글로벌 프로그램	134,231	128,128	701	5,401
	소계	474,534	437,540	27,303	9,687
2019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32,923	126,476	1,963	4,483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21,582	119,314	1,270	1,000
	중남미지역국가원조	54,603	53,892	0	711
	중동CIS 지역 국가원조	49,635	42,375	5,519	1,743
	글로벌 프로그램	154,152	152,622	373	1,156
	소계	512,895	494,679	9,125	9,093

구분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47,160	134,890	1,809	10,461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95,311	90,789	1,920	2,600
	중남미지역국가원조	48,644	44,379	471	4,265
	중동IS 지역 국가원조	37,503	33,514	399	3,591
	글로벌 프로그램	106,932	96,932	0	10,000
	소계	435,550	400,504	4,599	30,917
2021.7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92,226	67,558	-	-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18,080	52,074	-	-
	중남미지역국가원조	70,904	22,922	-	-
	중동IS 지역 국가원조	55,471	20,191	-	-
	글로벌 프로그램	86,887	40,633	-	-
	소계	523,568	203,378	-	-
합계(2016~2020년)		2,323,379	2,201,758	67,547	54,543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은 ODA사업으로 수원국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사업비의 연례적 이월이나 불용이 여타 사업에 비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원되는 출연금인 만큼 보다 철저하게 관리 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은 출연금 정산을 「한국국제협력단 회계규정」 제23조(잉여금의 처리)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정산 관련 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회계규정」	
제23조(잉여금 처리)	
①	매 회계연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②	이월결손금은 제1항에 따라서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을 한도로 보전하고 부족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결산잉여금이 사업 잔액인지 출연금으로 인한 금융성 수익까지 포괄하는지 등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목적성 출연사업비의 정산이 차년도 해당 사업에 편성되지 않고 있다.⁶³⁾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국제협력단의 연례적 사업이월에 따른 금융수익을 기관의 수지차 수입으로 계상한 이자수입은 3억 1,920만원이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 이월에 따른 이자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이자수익	117	42.7	30	105.7	23.8	319.2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 수입 등을 세부 내역까지 추계하여 자체 세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코드가 상이한 목적성 개별 사업비별로 출연금에 대한 정산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출연사업의 집행잔액,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자체수입으로 반영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코드가 상이한 목적성 개별 사업비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이 자체수입으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수지차 기관의 본 목적인 예산절감 달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⁶⁴⁾

63) 이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은 해당 정산분 등 이월된 결산 잉여금 등 자체 수입이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직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발생분 추정 가능시기는 당해연도 2~3월사이로 차년도 예산이 아닌 차차년도 예산편성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64) 보건복지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목적사업비 수지차 보전을 위해 개별 사업별 통장을 구비하는 것은 목적사업비에서 비롯되는 이자수익을 계산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이 밖에 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자 계산을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 1건의 세부사업당 최소 3개 은행계좌가 필요하며, 2021년 현재 협력단 일반회계에 편성된 단위사업은 8건, 세부사업은 총 39건으로 총 117건의 은행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야하므로 이는 재무회계 처리시 행정적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 연례적 이월 사업비(일반회계) 출연금 정산 여부]

구분	개별 통장	정산반납		활용
		사업비잔액	이자수익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X	X	X	사업비: 차년도사업비 반영 이자수익: 수지차예산 반영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X	X	X	
중남미지역국가원조	X	X	X	
중동CIS 지역 국가원조	X	X	X	
글로벌 프로그램	X	X	X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가. 분석의 결론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상 출연금(350목, 360목)이라는 비목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출연사업 규모는 2022년 기준 53.3조원(총지출 대비 8.8%)에 이르며, 2,724개 세부 사업의 재정을 출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출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2022년 사이 연평균 8.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재정지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금은 타당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연금은 그 특성상 집행상 탄력과 자율의 여지가 인정되고 있어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재정지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연금 예산의 타당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요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출연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재정지원),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출연금 사업의 선정 시, 출연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일관성 있는 선정 기준이 부재하였다.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출연의 목적 및 지원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기관의 운영’과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 등’ 달성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출연의 목적을 기관운영출연과 연구개발출연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재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출연 등을 기타의 영역으로 두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출연과 함께 목적성 출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출연은 전체 출연예산의 41.7%(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출연금이 「국가재정법」에 제정될 시점에 비해 그 규모와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법상 사업출연에 대한 명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은 출연금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량의 범위가 넓고 반대

급부가 없음에 따라 지원이 남용될 여지를 막기 위해 출연의 조건으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출연의 예산 편성·집행을 살펴보면, 일부의 경우 출연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출연 목적에 부합성이 떨어지는 출연 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출연사업의 예산편성(재정지원) 시, 출연금 유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산이 편성하지 않아 단일 세부사업에 서로 다른 목적의 출연금이 혼재되어 편성되고 있는 문제와 출연금 지원의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출연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있었다. 출연금은 크게 목적성사업출연금과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두 유형의 목적은 상이하다. 그러나 실제 출연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분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편성되지 않고 단일 세부사업에 혼재되어 편성되고 있다. 상이한 목적의 출연금이 혼재되어 함께 편성될 경우 사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연금 외에 법적 정산절차가 없어 정확한 사용 내용 파악이 어려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출연사업 지원방식은 사업목적에 우선한 수행기관 중심으로 출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연금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출연기관의 재원지원 방식에 대한 규정 체계는 출연이나 출연 또는 보조로 구분된다.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보조금과 함께 계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예외적으로 출연금과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지원에 대해 출연만을 규정한 경우로, 출연예산과 보조예산을 함께 편성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에 대해 법적 한계를 지적받을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질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 우선하여 수행기관의 성격을 재정지원방식 전환의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출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재원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상대적으로 재량의 정도가 큰 출연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정산 등에 관한 통제 등 사후통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출연사업 관리에 있어서 통일된 정산 규정이 없어 사업별, 수행기관별 정산방식이 상이하게 수행되고 있거나 나름의 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출연금의 투명한 정산의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출연금은 관

런 법령이나 소관부처 및 해당기관의 지침·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출연사업마다, 출연기관마다 정산방식이 상이하다. 일부 기관의 경우 정산 규정이 없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을 기관의 자체수익에 반영하여 기관운영비에 충당하거나 기관 내 유보하여 출연의 목적에 반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연금 정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투명한 정산이 어렵고, 출연의 목적에 반하는 잔액 및 이자의 운용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이한 정산체계는 출연금의 사후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개선과제

첫째, 「국가재정법」 제12조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출연금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목적의 출연금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사업출연 등 다른 출연금은 기타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업출연금 예산은 전체 출연예산의 약 42%에 달하고 있으며, 출연금이 「국가재정법」에 제정될 때 보다 그 중요성은 커졌다. 이러한 사업출연금의 중요성을 법에 반영하여, 현재 규정된 두 가지 유형 이외에 어떠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업이 출연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12조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량의 범위가 넓고 반대급부가 없는 출연금의 특성에 따라 지원이 남용될 여지를 막기 위해 출연의 조건으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수행 근거에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경우와 해당기관이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재원도 출연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출연의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연의 재정지원에 대한 비일관적인 규정의 개정을 통해 기관의 운영과 사업의 법률적 차이를 명백히 구분하여 해석에 따라 출연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출연금의 통일된 정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에 대한

통일된 정산 규정이 없어 사업별 또는 출연기관별로 상이한 방식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대한 통일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연구개발사업인 사업출연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공통의 규율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통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2021년 이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정산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 따라 관리 및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출연금에 대해서도 출연의 특성인 집행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효율적 재정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통의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한 출연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록〉 출연기관 재정지원 관련 규정 현황

기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130조(운영자금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정부및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기부금
고용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재해보호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산업재해보호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3(출연금의 용도) ① 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별 제96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출연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소관 부처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u>공단에의 출연</u>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공정 거래 위원회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설립 등)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법] 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국립광주과학관 ·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국립 과학관법인의 재원)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 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한국여성과학 기술인육성 재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권한의 위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정부의 출연금
한국화학 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조(운영 재원)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노력하여야 한다.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한국과학 창의재단	[과학기술기초법]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초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 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시설·운영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상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과학기술 일자리 진흥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산업진흥법]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교육부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전남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충북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강원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국립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u>서울대학교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u>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u>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u>	
	제주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u>대학교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u>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금) ① 정 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 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국토 교통부	국기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 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법] 제8조(자금의 조달 등) ①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 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3조(출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⑥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물 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수산교육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법]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문화 체육 관광부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 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한국콘텐츠 진흥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⑧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운영및 제7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7조(출연금)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5조(재원) ② 정부는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 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원) ① 조정중재원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출연금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u>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u> 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u>업무</u> 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재원의 <u>설립·운영</u> 에 드는 경비에 <u>충당하기 위하여</u>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u>사업과 운영</u> 에 드는 경비에 <u>충당하기 위하여</u>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출연금	
산업 통상 자원부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1조의2(출연금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한국가스 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한국전기안전 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여성 가족부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u>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u>	
	한국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25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u>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u>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u>
외교부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u>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u>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법]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u>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u>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한국국제 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6조(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u>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u>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중소 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정부의 출연금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⑥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창업진흥원) ⑤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⑩재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통일부		1.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법] 제53조(사업) ③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원)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법] 제12조(재원)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1조(재원)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소관 부처	출연기관명	근거법	
		설립·운영	사업(업무)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일	2022년 5월
발행인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48-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8-001949-14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